

건축사

大韓建築士協會誌

建築法施行令 全載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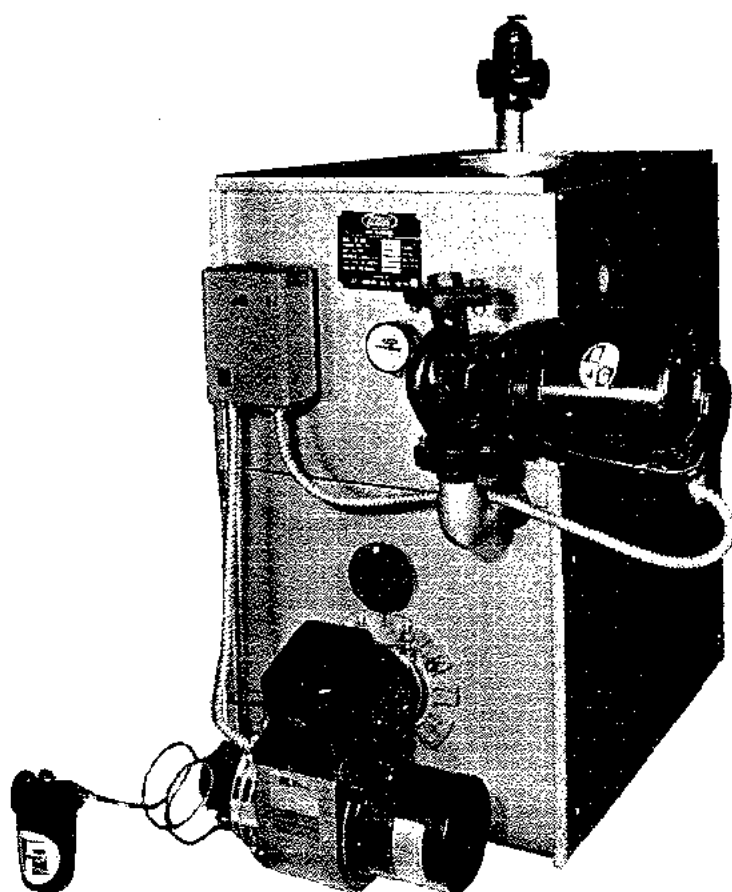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
품



(株) 石宇建築

제조공급원



三成設備工業社

서울特別市 城東區 華陽洞 167-24號

☎ 55-1194-5519



오리표싱크



미관의 設計와 당신 住宅을 더욱 빛나게 하는
標準化된 規格, 格調높은 오리표 싱크는
건축사 여러분의 設想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대림주방센터

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2가 49-4 Tel. 68-3665

새생활주방센터

성동구 신사동 466-1 Tel. 52-1567

서일주방센터

중구 을지로2가 (제일도기사 옆) Tel. 27-3737, 3736

복지주방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 로얄 맨션 Tel. 49-9001

현대주방코너

중구 을지로 3가 5번지 26 Tel. 27-1807, 26-4083

제일주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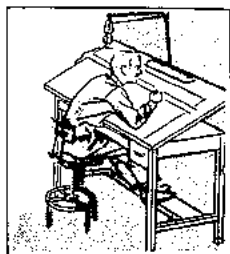
중구 을지로 2가 101번지 15 Tel. 27-3704, 4051

동서주방기구상사

세운상가 나동 Tel. 27-7466

오리표주방

중구 을지로 4가 (국도극장 맞은편) Tel. 28-1807, 26-4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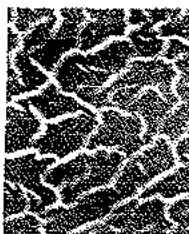


당신의 設計를 더욱 빛나게!

● 시멘트와 마벨코트만으로 건축 미의 극치를 —————



붓을 삼하로 움직인 예



붓을 파형으로 움직인 예



고운색 · 高尚한 質感 · 絵画的 패 턴

마벨코트®

특성

- 耐燃性입니다. 引火性이 없고 強한 火焰에 닿아도 炭化하는 程度이고 延燃性이 없습니다.
- 絵画的으로 模様을 構圖할 수 있습니다. 下塗에 対한 도요마벨의 塗布方法에 따라 各樣各 色의 絵画的 模様을 構圖할 수 있고 下地の 빛깔과 配色에 따라 아름다운 意匠을 構成합니다.
- 耐候性, 耐摩耗性, 耐藥品性이 優秀합니다. 安定된 合成樹脂이므로 變退色, 剝離, 龜裂되지 않고 耐알칼리, 耐酸, 耐油性이 強합니다.
- 接着性이 強하고 耐水性이 優秀합니다. 接着性이 優秀한 特殊 樹脂로서 皮膚을 構成함으로서 接着力이 強하고 耐水性이 優秀합니다.
- 速乾性이기 때문에 作業이 빠릅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經濟적입니다.

용도

- 建築의 内外裝 ● 各種工業用 2次加工 ● 各種鐵板 ● 各種 몰탈 · 부록 · 하드보드 · 스투트 · 피혁 · 플라스틱

※ 마벨코트 下塗用은 防水의 效果가 큰 새로운 建築도장재 이다.

營業部 직통

(26) 1806-4509-8520

(27) 1730

日本東洋化成技術製 原料提供 / 도요마벨코트株式会社



韓國
總販

泰隆興業株式会社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46-8 (太光빌딩 201-202-203호)

不燃材 天井 에革新!

O-BAR
I-BAR

式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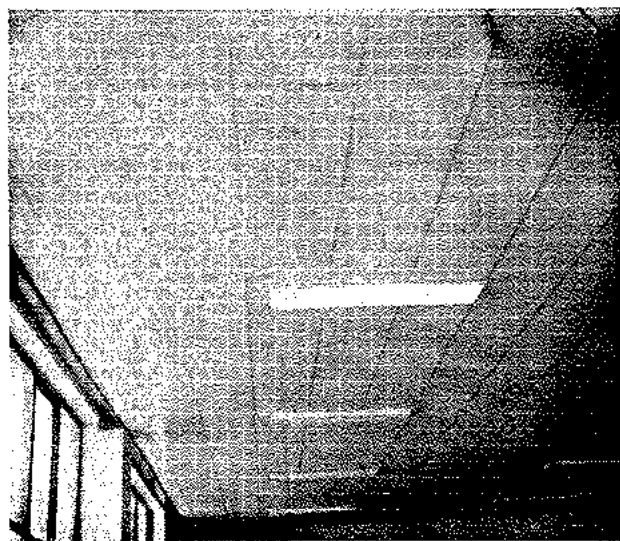
S.S. 보-드
미네랄텍스

실용신안 제 9618호
의장등록제 12387호

1,000℃ (火災溫度)에서 타지 않습니다.

강력한 흡음성과 흡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 施工方案內 ■

1. 輕量鉄骨天井틀

O-BAR式 H-BAR式

I-BAR式 M-BAR式

2. 不燃材天井텍스板

미네랄텍스 와 S.S. 보드.

3. 후랏쉬도아, 스틸스라이딩,

이동칸막이, 스프레이팅월,
스판드레일, 텍키푸레이트,
샷다-

4. 펜딩, 캣딩, 스릿딩, 任意巾 長의 加工物.

実績20年!
奉仕하는 새기술



新協建設工業株式會社

本社 및 工場 서울 城東區 聖水洞 2 街 289-10 ☎ 55-3887
市内連絡事務所 ☎ 27-0053 0054

建築士

'73

8

通卷 第 57號

U. D. C. 69/72(054-2) : 0612(519)
1973년 8월 31일 발행

編纂委員會

委員長	安瑛培
委員	金萬盛
	安仁模
	元正洙
	劉熙俊
	尹太鉉
	李丞雨
	李昌敏
	李興秀
	韓鼎燮

■表紙：佛國寺 石染
攝影：元大淵

協會記事 (2)
建築界動靜 (8)

住居環境과 造景計劃을 위한
要素 張基化... (12)

佛國寺의 基壇 (17)

建築法規 問題選① 韓鼎燮... (26)

建築法 施行令 (全文 180條) (27)



建築士

發行人兼 編輯人：姜大雄

登錄番號：第 24-1251 號

登錄日：1967 年 3 月 23 日

通卷 第 57 號 1973 年 8 月 30 日 發行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街 60-17

☎ 02-9491, 9492

印刷所：高麗文化印刷株式會社

《非賣品》

協會記事

제10회 이사회

일 시 : 1973. 7. 11(수) 15: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출 석 : 회장 강대웅, 이사 오웅석, 김지태, 안영
배, 송관식

참 석 : 감사 윤희준, 서울시 지부장

보고사항

1. 경북지부 영주분소 설치 승인(6. 14)
2. 각 시도지부의 타지부 소속회원의 실적회비 징수에 관한 2차 공문시달(6. 17)
3. 한국방송공사의 건축사업부 보수기준 질의 회신(6. 17)
(공사비가 10억 이상일 경우의 해석임)
4. 윤리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6. 17)
(전남 박종대, 주광근과 부산 권경현 회원전)
5. 제 6 회 편찬위원회 개최(6. 21)
(6. 7 월호 편집계획 검토)
6. 각 시도지부에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시달(7. 5)
7. 제 1 회 지도위원회 개최(6. 30)
(개정건축법, 보수기준의 개정 및 건축사업 개정에 대한 자문의 건)
8. 제 1 회 윤리위원회 개최(7. 7)
(전남지부 박종대, 주광근 회원의 3 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부산지부 권경현 회원의 6 개월간 회원자격 정지를 결의)

부의안건

1. 영주분소장 취임 승인에 관한 건
(영주 분소장에 김성중회원 취임을 승인)
2.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수락여부에 관한 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산지부소속 권경현 회원의 6 개월간 자격정지 및 전남지부소속 박종대, 주광근 회원의 3 개월간 자격정지를 수락 결의)

3. 경기지부의 정회원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명조치 요청에 관한 건

(정관의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결의)

문정희(회비 17개월 미납)→제명

최동숙(" 16개월 ")→제명

이무부(" 13개월 ")→제명

김남규(" 12개월 ")→제명)

4. 강습회 개최에 관한 건

(3단계가 공동으로 개최 가능하면 공동주최로 하고 불가능하면 협회 단독으로 개최하도록 송관식 이사에게 일임)

5. 건축사업 개정에 관한 건

(송관식 이사가 주관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연구한 것을 결의)

6.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개정에 관한 건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를 개정기로 결의하고 개정 작업을 오웅석 이사에게 일임.)

제11회 이사회

일시 : 1973. 8. 8(수) 15:00

장소 : 협회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대웅, 이사 김지태, 송관식, 오웅석

참석 : 감사 김원안, 서울시지부장

보고사항

1.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7. 13)
(부산지부 권경현 6 개월 자격정지
전남지부 박종대, 주광근 3 개월 자격정지)
2. 영주분소장 취임승인(7. 18)
(분소장 김성중 취임 승인)
3. 건축물의 건축여제 조치 각시도지부장에게 발송(7. 20)
(불요불급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4. 실적회비징수 산출기준표 개정에 따른 공문 각 시도지부에 발송(7. 23)
5. 포항 종합제철 공장시찰 협조 요청공문 발송(7. 31)
6. 회지 6, 7월호 합본 발행 각시도지부에 발송(8. 1)
7. 수출산업 공업단지에 건축허가 사무가 공업단지 관리청으로 이관되었음을 각시도지부에 통지(8. 4)

부의안건

1. 보수기준 개정 추진에 관한 건
(사무처에서 연구점토하기로 결의)
2. 충남지부의 유공회원 표창상선에 관한 건.
(수여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수여하기로 결의)
3. 특수전물시가 결정기준액표 감수 요청에 관한 건.
(송관식이사와 오동석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의)

第3回 全国 支部長 會議 開催 浦項綜合製鉄 工場도 視察



第三回 支部長 會議光景(浦項에서)

第3回 全国 支部長 會議가 慶北支部 浦項 分所에서 8. 13(월) 12:00시에 개최되었다. 會長이하 本協會 理事 및 各市道支部長이 참석한 가운데 本部 業務현황과 各市道支部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토의사항에 들어갔다.

現 會員業務活動에 가장 시급한 改正建築法과 同施行令 改正에 따른 강습회 개최에 관하여 本協會 및 市道支部長의 토의가 있었으며 施行令 公布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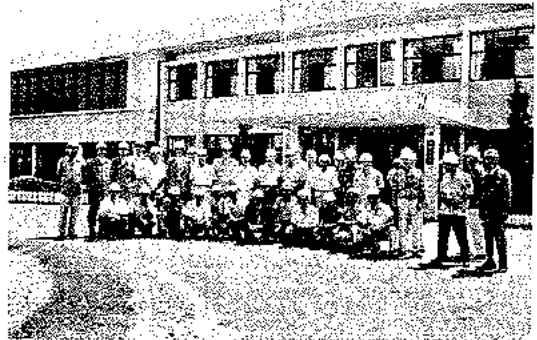


慶北支部 浦項分所에서 支部長會議 記念으로 제출 시계를 寄贈하는 姜大雄會長과 梁任洙 分所長

더불어 서울, 大田, 釜山 3個 地区에서 강습회를 개최할 것과 그 세부 계획은 차후 各市道支部로 공문시달할것을 결정하고 또 協會 運營에 대하여 많은 意見交換이 있었다.

그리고 支部長 會議에 앞서 浦項綜合製鉄 工場視察을 가졌었다.

오전10:00시 정각에 浦項綜合製鉄 工場內에 있는 研修院 建物에 도착하여 곧 工場現況室로 들어갔다. 이 現況室에는 全工場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大規模 模型을 제작해 두었으며 이 模型과 同時에 全工場을 比較해 볼 수 있게 四方벽면을 유리로 만들어 그 웅장한 全景을 한눈에 바라다 보게 꾸며 놓은 狀況室에서 간단한 工場現況을 설명을



浦項製鉄 視察團 一行

고 곧바로 工場施設을 일주하면서 巨大한 용광로, 厚板工場, 熱延工場등 内部를 둘러보면서 12:00시경에 끝마쳤다.

支部長 會議가 끝난후 會長은 慶北支部長, 梁分所長을 대동하고 15:00시에 浦項市長을 訪問. 浦項分所 會員들의 当面한 建築行政문제에 대하여 是正 및 협조를 直接 요청하고 앞으로 우리 建築士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市長과의 화기에 찬 面담을 가졌었다.



浦項市長室에서 市長과 面담하는 本協會 姜大雄 會長과 李根祥 慶北支部長

協会動靜

慶南支部

慶南支部 事務所 移轉

本協會 慶南支部 事務所가 다음과 같이 移轉 되었다.

다 음

移轉場所: 마산시 장군동 4 가25

(지방법원 마산지원 근처)

移轉月日: 1973. 7. 14

電話番號: 변동없음 (4540)

濟州支部

본도 남제주군에서 지난 7월27일 본 지부에「建築行政 處理에 따른 협조」에 관해 아래와 같이 요청해 왔다.

제목: 건축행정 처리에 따른 협조

1. 본군관내 건축행정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허다함으로 제주도 중랑관광개발 계획 및 도시 계획 재정비가 확정고시될 때까지 가급적 영구 건물인 철근조 건축물 설계를 지양토록 귀 관하 단체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73. 3. 2. 중문면, 성산면 一部가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이 결정시 까지 동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 대정 도시계획지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으나 가로망 형성이 안되어 사실상 도시개발 예정지구나 다름없는 실정으로 본 지구 내 영구적인 철근조 건축물 신축을 공증자서를 첨부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철거가 난할 것이며,

다) 또한 1971. 5. 20 및 73. 4. 3일자 지정관광지 및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서귀, 남원, 중문, 안덕면 일부지역이 관광개발 예정지역으로 공고되어 공작물 설치허가가 보류되어 주민들이 직접, 간접으로 설계사무소에 문의할 시는 정부시책을 적극 PR하도록 권장을 바랍니다.

(남제주군수)

會員動靜

會員資格停止 (非傳會員의)

本協會 倫理委員會(委員長, 黃東俊(黃東俊法律事務所))에서는 지난 7월7日 本協會 會議室에서 倫理委員會를 開催코 아래와 같이 會員資格 停止를 通告했다.

아 래

1. 권경현 (부산지부) 6개월
2. 박종대 (전남지부) 3개월
3. 주광근 (") 3개월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정천경 (세경건축연구소)

성북구 정릉동 132-33 TEL. 94-2386

등록번호: (2級) 296

이찬영 (광진건축연구소)

동대문구 신설동103-3

(광일빌딩203호) TEL. 52-7912

등록번호: (1級) 522

김용완 (오성건축)

영등포 2가158

TEL. 62-5762

송장복 (청목건축실계사무소)

중구 충무로 4가126

TEL. 27-3768 · 3769

등록번호: (1級) 1-547

金重權 (一級) (아시아建築技術公社)

東大門區 新設洞119-11

TEL. 54-4225

免許番號: 1-1225

登録番號: 545

登録年月日: 1973. 5. 24

장 옥 (동화건축공사)

城東區 흥인동122

TEL. 52-4615

免許番號: 1-427

登録番號: 541

登録年月日: 1973. 5. 9.

張相翼(一級)(世安建築設計事務所)

城東區 舞鶴洞 一

TEL. 54-7750

免許番号: 1-550

登録番号: 550

登録年月日: 1973. 7. 5.

황학선(二級)(대원건축연구소)

永登浦洞 2 가 160

TEL. 62-1261

免許番号: 2-1525

登録番号: 297

登録年月日: 1973. 7. 2.

李璣彦(二級)(이화건축연구소)

西大門區 응암동 1-11

TEL. 38-1019

免許番号: 2-232

登録番号: 298

登録年月日: 1973. 7. 16.

事務所 移転

조태웅(二級)(조양建築研究所)

移転地: 東大門區 보문동 1 가 30

TEL. 93-5124

한창우(一級)(창성건축설계사무소)

移転地: 西大門區 응암동 144-8

TEL. 39-2916

한상겸(一級)(세종건축설계사무소)

移転地: 鍾路區 世宗路 114

TEL. 73-1743

한완수(一級)(임채건축연구소)

移転地: 城東區 중곡동 241-1

TEL. 55-6671 교 10

尹汝鵬(二級)(正亜建築公司)

移転地: 城東區 舞鶴洞 1

TEL. 53-3560

池 淳(一級)(株式会社 一洋綜合技術團)

移転地: 麻浦區 桃花洞 마포아파트 505호

TEL. 33-7966

南贊祐(二級)(남일建築研究所)

移転地: 道蓬區 道蓬洞 144-5

TEL. 26-4549

朴運旭(一級)(朴運旭 建築設計事務所)

移転地: 中區 乙支路 4 가 삼풍빌딩 809호

俞在鉉(二級)(중진건축공사)

移転地: 西大門區 응암동 96-1

TEL. 92-7884

안선구(一級)(안선구 건축연구소)

移転地: 鍾路 2 가 84-9

TEL. 75-8951 교 185

최 웅(一級)(현대건축공사)

移転地: 城北區 미아동 482-14

TEL. 92-5890

송장복(一級)(삼성종합기술단)

移転地: 中區 忠武路 2 가 52-10

TEL. 27-3768

송인창(二級)(인왕건축연구소)

移転地: 관악구 봉천동 7 의100

TEL. 68-1844

김창서(협화건축)

移転地: 中區 明洞 2 가32-5

TEL. 28-9761

移転年月日: '73. 6. 5.

최선규(자선건축)

移転地: 西大門區 응암동317-83 TEL. 38-6094

移転年月日: '73. 6. 19

이재제(공신건축)

移転地: 신사동 山467-3 TEL. 54-3227

移転年月日: '73. 6. 18

손동익(신성건축)

移転地: 城東區 반포동63-4 TEL. 54-2114

移転年月日: '73. 6. 22.

박용수(광림건설)

移転地: 中區 忠武路 1 가24-30 TEL. 28-4909

移転年月日: '73. 6. 22.

김현곤(삼호건축)

移転地: 장사동233-7 TEL. 75-8774

移転年月日: '73. 6. 25.

권오주(국제건축)

移転地: 西大門區 의주로 1 가107-1

移転年月日: '73. 6. 22. TEL. 73-7247

김창용(동서환경)

移転地: 鍾路區 안국동163

移転年月日: '73. 6. 26.

최종진(삼일건설)

移転地: 관악구 봉천동59-30

移転年月日: '73. 6. 11.

정남조 (동양설계)

移転地: 鍾路 2 가 5 TEL. 74-6581

移転年月日: '73. 6. 11.

韓鍾變 (富國建築設計事務所)

移転地: 서울中区乙支路 3 가350-1

TEL. 27-5536

移転年月日: 1973年 8月 日

韓基崙 (三益建築研究所)

道峰区 倉洞733-7 TEL. 99-8984

閉業會員

송경배 (一級) (미강건축)

종로구 관철동 18-8

登録取消

임도생 (一級) (임건사)

移転地: 中区 다동 131

休業會員

정거래 (二級) (천지건축기술공사)

西大門区 봉래동 1 가 7 TEL. 32-5106

休業期間: 1973. 8. 1. ~ 1974. 1. 31

(6 개월)

再開業會員

유천준 (一級) (공신건축연구소)

中区 乙支路 2 가 163-1

TEL. 22-1444

転出會員 (京畿支部로)

김동진 (삼일건축)

中区 무교동11 TEL. 22-4974

민영준 (동덕건축)

구기동 53-25 TEL. 53-4920

事務所 登録 취소

'73 명부사범 단속 세부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등록 취소된 대상명단은 아래와 같다.

등록번호	성명	주소	상호
1-158	임도생	중구 다동131	임건사
1-296	전필주	중구 무교동40	여미도사건축
1-362	부대진	용산구 문배동40-21	전아건축
1-407	이영근	중구 북창동19-3	정한기술연구소
1-327	김윤중	종로구 세종로173	삼신건축
2-213	이진우	마포구 합정동414-6	대정건축

慶 吊

李成傑 (三進建築事務所) 會員은 지난 73年 7月 30日 午前 10時 (麻浦區) 철두산 천주교 기념관에서 葬禮를 밟았습니다.

釜山市支部

事務所移転

朴丁玉 (美都建築設計事務所) (一級)

移転地: 釜山市東區凡一洞830-25

移転年月日: 1973. 7 TEL. 8-0651

鄭鎮洪 (로알建築研究所) (二級)

移転地: 釜山市東區区계동608 TEL. 52-3815

移転年月日: 1973. 7.

安國雄 (世紀建築) (二級)

移転地: 釜山市東區草梁洞1147의13

移転年月日: 1973. 7.

商号変更

鄭鎮洪 (釜山市東區区계동608) (二級)

前, 元一建築設計社를 로알建築研究所로 変更

安國雄 (釜山市東區草梁洞1147의13)

前 世明設計社를 世紀建築으로 変更

休業會員

沈載奭 (技術建築研究所) (一級)

東區 明倫洞598

休業期間: '73. 7. 21~'74. 7. 20 (一年間)

新入會員

李珍煥 ((一級) 東洋綜合設計研究所)

釜山市中区 中央洞 4 가19 TEL. 6-6917

免許番号: 1202

登録番号: 187

登録年月日: 1973. 6. 13

京畿道支部

新入會員

韓教善 (日新建設社) 富川市 深谷洞 600

免許番号: 1-405- TEL. (仁川) 5-4054

登録番号: 55

李靈杓 (서한건축)

龜仁郡 龜仁面 金良場里133 TEL. (용인) 332

免許番号: 1-1 357 13

登録番号: 71

忠南支部

新入會員

朴敏行 (박민행 건축설계사무소) (二級)

大田市용두一洞 1 번지 (병참학교 앞)

TEL. 3-0419

全南支部

事務所 移轉

崔龍範 (一級) (都市建築研究所)

移轉地: 광주시 동구 황금동 111-1

移轉月日: 1973. 8

TEL. 2-0264

鄭樂範 (一級) (新興建築設計事務所)

移轉地: 광주시 동구 대의동 75 (광주 YMCA)

移轉月日: 1973. 8

TEL. 2-2614

金成鉉 (二級) (時代建築事務所)

移轉地: 광주시 동구 대의동 75

移轉月日: 1973. 8. (광주 YMCA 202호)

TEL. 2-5163

新入會員

崔秀一 (百濟建築設計事務所)

광주시 동구 대의동 83-2 TEL. 2-3184

閉業會員

朴憲東 (一級) (光州綜合設計事務所)

광주시 광산동 60

李光國 (一級) (李光國建築研究所)

광주시 대인동 49-5

沈斗變 (二級) (沈斗變建築事務所)

광주시 우산동 540

慶南支部

事務所 移轉

尹希俊 (南部建築事務所)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朴榮大 (여도건축설계사)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盧殷燮 (현대건축연구원)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朴商浩 (석림건축설계조경연구소)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宋德敏 (시대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崔桂俊 (구성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朴文星 (대성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李鍾泰 (신진건축설계사)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金鎮五 (신흥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李珣熙 (박희설계사무소)

移轉地: 蔚山市玉橋洞 231

移轉月日: 1973. 7. 2

國民住宅債券

電力債券

代納 및 賣買

서울 特別市 中区 太平路 2 가 46-5

京一社

122-3700 (차 통)

123-6000 (")

122-6000 (연 결)

口座 NO. 서울農協中部支所 3700

第一銀行德壽支店 6000

建築界動靜

서울市 災害危險地區內 建築制限

서울市內 34個 地域 対象

서울市에서는 建築法 第26條에 의거하여 災害危險地區內의 建築을 制限하는 條例를 마련, 公布했는데(施行 7月11日).

이에 對해 梁鐸植 서울市長은 首都서울의 健全한 都市發展에 寄與함은 勿論 災害를 事前에 預防키 위해 이같은 條例를 制定했다고 말하고 地區設定對象을

- ① 漢江水位가 10.5m 上昇했을 때 内外水가 浸水되는 區域과
- ② 豪雨時 山沙汰가 일어날 區域
- ③ 孤立地域으로 設定했다고 말했다.

또한 梁市長은 災害危險地區內에서의 建築 制限을

- ① 위험地區內의 地盤面이 漢江人道橋水位가 10.5m 일 때 内外水로 困한 浸水面 보다 1m 以上 높고 地區外로 부터 當該 地까지의 通行에 支障이 없는 地內의 建築物과
- ② 木材 積置場 기타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
- ③ 停車場 停留場 기타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
- ④ 自動車 車庫 기타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

그린벨트 內 增改築은 道知事 許可로

建設部는(8月3日) 그린벨트 內에서의 建築과 開發 行為中 公益上 必要한 既存住宅 및 非住宅의 再改築과 一定規模의 增築은 道知事の 許可만으로 開發이 可能하도록 했다.

八月부터 可能토록 措置된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地域公益上 必要한 派出所 및 哨所의 建築과 關聯工作物의 設置

- ② 그린벨트指定이 없고, 農業管理에 必要한 倉庫와 畜舍의 建築으로 그 規模는 豚舍, 牛舍 및 鷄舍는 既存部落內 一家口當 10坪未滿에 限定되어있고

- ③ 酪農을 위한 草地造成은 該當面積의 0.5%와 面積이 좁은 蚕舍 및 뽕나무밭 造成, 그리고 既存住宅의 再改築과 10坪 未滿의 增築.

- ④ 非住宅用 建築物의 再改築許可는 直接 道知事가 最終許可토록 되어있다.

그런데 建設部가 이와 같이 措置를 緩和한 것은 그린벨트의 效率인 事後管理와 民願事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道에 許可事務를 委任하게 된 것이라 한다.

都市地域 建築許可時 綠地造成 義務化

建設部, 關係法令에 規制方針

建設部는(8月1日) 都市生活環境改善과 公害防止를 위해 都市地域의 住宅, 工場 等の 建設에는 一定 基準의 綠地造成을 義務化할 方針이다.

또한 建設部에 의하면 現在 都市의 過密化로 크게 不足한 상태에 있는 최소한의 公開綠地를 確保하기 위한 것인데 住宅, 工場, 公共建築物 等の 建築許可條件으로 綠地造成을 義務化하고 새로 制定될 建築法 施行規則에 의해 規制措置를 強化할 予定이다.

또한 建設部는 各種 工業団地에 入住하는 業體에 對해서는 반드시 각 工場 間에 遮斷綠地를 造成하게 하고 都市周邊의 그린벨트地域에 對한 年次的인 造林計劃을 통해 綠化事業을 벌일 方針이다.

宅地, 私道 等 開發事業 新規許可억제

全서울 公團化 計劃따라

既 許可事業 年內 모두 終結

서울市는(7月31日) 全서울 公團化 計劃에 따라 이미 許可된 宅地造成, 개간, 채석, 私道축소 等 各種 開發事業을 오는 年末까지 모두 終結키로 하고 新規許可는 76년까지 一切 抑制키로 했다.

또한 서울市는 全서울市 公團化計劃에 따라 이미 進行中인 各種 開發事業地에 對해서는 선녹화 確認후 竣工檢査를 해주기로 했으며 300坪 以上の 芳치된 空地나 開發事業地는 모두 原因者나 所有

者 負擔으로 나무를 심어 綠化토록 했으며 이 計劃을 強力히 推進하기 위해 새로 「市空地綠化對策 審議委員會」(委員長=副市長)를 設置, 서울시内の 모든 空지를 航空사진과 地上 정밀조사를 통해 空지를 綠化토록 했다.

한편 이 原因者나 所有者가 履行하지 않을 경우에는 砂防事業法에 따라 서울시가 代執行한 後 이 地域을 砂防指定地나 公園用地로 指定키로 했다.

또한 이 밖에 서울시는 重要 幹線道路邊의 遊休地 500m 内外와 작물재배가 適合치 않은 農耕地에 對해서는 地主에게 이 地域을 樹林帶 養苗圃地, 나무시장 등을 造成토록 권유키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조사한 綠化對象 空地는 7백63 箇所에 約 1백50萬坪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都市計劃 特定整備地區 네곳 設定 建設部 315 号 告示로

建設部는 8 月 1 日 附 告示 第315号로 서울 都市計劃 特定街區 整備地區로서 半島地區, 東崇, 梨花地區, 乙支路 5, 6 街地區, 龍頭地區 등 네곳의 位置를 決定 告示했다.

地 區	位 置	面 積 ^{m²}
半 島 地 區	乙支路一街, 南大門路 2 街, 小公洞 一部地域	35,000
東崇, 梨花 地區	東崇洞, 梨花洞, 연건동, 룡신동, ... 部地域	154,000
乙支路 5, 6 街 地區	방산, 乙支路 5 街, 6 街一部 地域	70,000
龍 頭 地 區	계기동, 용두동, 一部地域	108,000

22 個 都市에 新規 建築 許可 抑制 指示

이미 許可된 建築物과 特定開發促進地區는 除外

建設部는(7 월 12 日) 서울을 비롯한 釜山, 大邱等 22 個 都市에서는 不要不急한 建築物의 建築許可를 一切 抑制토록 一線 地方官署에 示達했다.

이는 政府의 鉄材消費抑制策에 따라 取해진 것 으로서 이번에 建築抑制對象都市와 抑制對象 建築物은 다음과 같다.

◇ 22 個 抑制對象都市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州, 馬山, 木浦, 水原, 城南, 蔚山, 淸州, 晉州, 春川, 麗水, 原州, 群山, 濟州, 安甞, 議政府, 順天.

◇ 抑制對象 建築物

(7) 公共建築物

- ①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의 庁舍
- ② 政府 投資機關 및 銀行의 事務室用 建物
- ③ 政府에서 認可한 公益法人의 事務室用 建築物

(L) 民間建築物

- ① 各種 興行場(劇場, 映畫館, 바, 카바레, 料亭)
- ② 사치성 浴湯, 集合場, 娛樂場, 展示場, 百貨店, 觀覽施設
- ③ 延面積 330^{m²} 以上の 住宅
- ④ 4 層以上の 事務室 專用建築物
- ⑤ 工事用 現場 事務所 및 倉庫, 興行 博覽會用 假設建築物로서 存置期間이 1 개월 以內的 建築物은 위험地區일지라도 建築이 可能하다고 밝히고, 其他 人命과 財産上의 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既存 建築物에 對해서는 相當한 期間을 두고 改修, 移轉 등 必要한 措置를 取할 方針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建築制限 地域은 다음과 같다.

◇ 孤立地域

西大門區 上岩洞(난지도)

◇ 外水浸水地域

- 성동구 고덕동一部, 암사동一部
- 관악구 사당동一部
- 영등포구 고척동一部, 개화동一部
- 서대문구 성산동一部
- 성북구 월계동一部
- 마포구 선주동一部

◇ 內水浸水地域

- 동대문구 회경동 28, 30, 170, 180부근
이문동 1, 2, 3동一部
- 성동구 성내동一部, 가락동一部
옥수동 191 부근
응봉동 66부근, 금호동 258부근
사근동一部, 자양동一部
군자동 205부근
- 도봉구 도봉동 93부근, 공릉동 627부근
상계동 955부근, 중계동 499부근
아계동 299부근, 창동 107부근
월계동 244, 151부근
- 성북구 석관동 37의 3
- 서대문구 상암동 342 부근
수색동 76 부근

- 관악구 본동 281~292 부근
- 영등포구 시흥 1동 555~561 부근
가리봉동 513 부근
- 신도림동 646~604 부근
- 구로 1, 2, 3동 일부

6月末 現在 全國建築許可面積 769만㎡

6月末 現在 全國建築許可面積은 769만 4천㎡로서 지난 '72年 同期의 377만 4천㎡ 보다 103.8%가 增加했다.

특히 工場建設 등에 따른 工業用建築은 지난해에 비해 297.8%나 늘어났다.

構造別 建築活動狀況은 鉄筋 및 鉄骨造 建築이 全体の 41% (320만 4천㎡)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前年同期에 비해, 木造建築은 19.4%가 減少된 反面, 煉瓦石造는 122.6%, 그리고 鉄筋 및 鉄骨造는 115.3%가 각각 늘어났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 및 釜山을 비롯한 22個 都市를 對象으로 사치성建築 및 不要不急한 公共建築物의 新築許可抑制案에 따라 建築景氣의 後退가 予見되고 있다.

6月末 現在 建築許可 面積은 다음과 같다.

(단위 : 千㎡)

区 別		建 築 許 可 面 積		前年同期比 增 加 率
		'72年6月中	累計'73. 1~6	
構 造 別	鉄筋 鉄骨	977	3,204	115.3%
	煉瓦 石造	980	3,939	122.6%
	木 造	21	147	19.4 %
	其 他	91	404	21.1%
用 途 別	住 居 用	902	3,844	77.2%
	商 業 用	293	1,024	58.3%
	工 業 用	728	2,225	297.8%
	文教社会其他	146	601	50.9%
	合 計	2,069	7,694	103.8%

'73上半期 市道別 建築許可面積

(단위 : ㎡)

道別	年度	'72	'73	対 比 %
서 울		1,273,925	2,734,495	214.7
釜 山		418,857	1,251,880	298.9
京 畿		50,507,194	1,063,453	209.6
江 原		96,880	109,335	112.9
忠 北		115,832	160,759	138
忠 南		218,085	269,951	123.8
全 北		112,214	239,292	213.2
全 南		174,698	2,218,446	136.5
慶 北		635,657	1,215,124	191.2
慶 南		199,132	378,239	189.9
濟 州		20,945	32,599	155.6
計		3,773,419	7,693,573	203.8

建築許可面積 계속 增加

5 月中 169만㎡,

前年 同期의 倍

政府의 不要不急한 建築抑制策에도 不拘하고 建築許可 延面積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7月 28日 集計에 따르면 지난 5月 한달동안의 建築許可 延面積은 168萬 9千㎡로서 이는 4月中의 1백60萬 5千㎡보다 3萬 4千㎡가 늘어났고, 前年 同期의 85萬 5千㎡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이같은 建築許可의 계속적인 增加는 수출수요의 好調에 따른 施設擴張 및 不動產 景氣의 上昇에 基因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5個月間의 建築許可 延面積은 다음과 같다.

(단위 : 千㎡)

5	4	3	2	1	月 年
855	774	640	433	253	'72
1,689	1,605	1,264	673	394	'73

서울市 主要都市計劃線 年内 確定

幹線道路 136개, 小路一部

서울市는(8月 7日) 市內 主要 都市計劃線을 年内에 確定하고, 나머지 小路의 計劃도 來年 8月까지 決定함으로써 全市內의 都市計劃 未決定地區를 一掃키로 했다.

또한 梁鐸植 서울市長은 今年末까지 幅 12m 以上の 幹線道路 136個(349km) 路線과 12m 未滿의 小路 3,300만坪 中 2,400만坪을 決定함으로써 實質的인 主要計劃線을 確定, 完了하고 나머지 小路 900만坪은 74年 8月까지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市 都市計劃區域內 幹線道路(12m 以上) 計劃인 總 500個路線의 1,370km는 確定 完了되며 小路의 경우 1억 3천 3백만坪中 900만 坪을 除外한 1억 2천 4백만坪이 今年內로 決定된다.

(京畿)

水原都市計劃 유원지 決定

建設部 告示341호로

建設部는 8月16日 水原都市計劃 유원지를 告示 341호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京畿道庁 및 水原市庁 및 용인군청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유원지 결정

위 치	면 적 ^{m²}	비 고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1,521,488	민속촌

忠 南

建築許可에 規格品 使用케

— 벽돌, 부력, 기와 등 —

忠南道는 各種 建築物의 建築許可時 벽돌, 부력, 기와 등을 使用時 그 建築物에 對해서 韓國工業規格品을 使用토록 條件附 許可하도록 各 市郡에 指示했다. 忠南道 當局은 各種 建築物의 建築時에 不良 시멘트 加工品을 使用함으로써 發行하는 人命 및 財産의 피해를 防止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이 指示하고 문공점사 조서의 제출시에 시멘트 加工品에 對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케하여 강도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토록 指示했다.

(慶北)

구미都市計劃用途地域 一部變更

8 · 4 建設部 告示 328호로

建設部는 8 · 4 일자로 구미 都市計劃用途地域 一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했다. (告示 第328号) 關係圖書는 慶北道庁 및 선산군청에 비치하여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用途地域 變更

地 域	기 정 (m ²)	변 경 (m ²)	변경후 (m ²)
住居地域	6,100,000	(+)387,000	6,487,000
綠地地域	57,866,000	(-)387,000	57,479,000

하양都市計劃 一部 變更

8 · 6. 建設部 告示 330호

建設部는 8 · 6 일자로 하양도시계획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決定告示했다. (告示 제 330号).

關係圖書는 慶北道庁 및 慶山郡庁에 비치하여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1. 計劃區域 變更

區 分	位 置	面積 km ²	비 고
기 정	경북경산군하양면 일부	6.93	
변 경	경북경산군하양면 일부	11.93	(+)5.00 km ²
	경북경산면진양면 일부		

2. 用途地域 變更

地 域	기 정 m ²	변경 m ²	변경후 m ²	비 고
工業地域		(+)774,000	774,000	
綠地地域	5,705,000	(+)4,226,000	9,931,000	

(慶南)

신평都市計劃 用途地域 一部變更

建設部 告示 340호로

建設部는 8 月16日 신평都市計劃 用途地域 一部를 建設部 告示 第340号로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慶南道庁 및 梁山郡庁에 비치하여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同告示 內容은 아래와 같다.

用途地域 一部變更

구 분	기정 (m ²)	변경 (m ²)	변경후 m ²
工業地域	1,200,000	(+)630,000	830,000
綠地地域	41,895,000	(-)630,000	41,265,000

언양都市計劃 一部 變更

8 · 4 建設部 告示 第327号로

建設部는 8 · 4 일자로 언양都市計劃 一部 變更을 다음과 같이 결정 告示했다. (告示 第327号)

關係圖書는 慶南道庁 및 울주郡庁에 비치하여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1. 都市計劃區域 變更

區 分	都市計劃區域	面積 (m ²)	비 고
기 정	울주군 언양면 송대리,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직동리, 여울리 일부 삼남면 신화리, 교정리 일부 삼북면 천전리 일부	19.00	
변 경	울주군 언양면 송대리,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직동리, 여울리, 반송리, 반천리 일부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 구수리 일부 삼북면 천전리 일부	32.40	(+) 13.40

2. 用途地域 一部變更

地 域 別	面 積 (m ²)		
	기 정	변 경	변 경 후
住居地域	1,990,000		1,990,000
商業地域	80,000		80,000
工業地域	190,000	(+) 504,000	694,000
綠地地域	16,740,000	(+)12,896,000	29,636,000
計	19,000,000		32,400,000

住居環境과 造景計劃을 위한 要素

張 基 化

住宅公社 建築研究室長

- (1) 住居環境의 改良
- (2) 造景要素와 視覺의 判斷
- (3) 造景計劃을 위한 基礎調査

1. 住居環境의 改良

開發途上國家에 있는 우리나라는 先 經濟開發, 後 社會福祉라는 立場에서 國家施策이 主導되어 온 까닭에 急激한 都市人口의 集中에 따른 住宅難 解決과 都市施設이 長期計劃보다는 短期的이었고 그것도 政治的인 面에서 수시로 變하였을 뿐 아니라 때로는 無法化된 住宅과 建物이 都市에 無秩序하게 建立되어 왔다.

結局 無計劃的인 建立이 오늘날에 와서 都市美觀을 어지럽게 하는 交通, 上下水道, 汚物處理 등 生活環境을 파괴시키고 있는 環境汚染은 社會的으로 漸次 深刻한 問題인 것이다.

先 經濟開發, 後 社會福祉의 施策에서 轉換點을 마련하는데 充分할 程度로 成熟된 時期에 있다고 본다.

人間이 生活해 가는데 있어서 職場에 從事하는 所要時間을 除外한 나머지 時間의 大部分을 住宅에서 된다고 본다면 더욱 住居環境의 改良施策이 時急한 問題이다.

即 上下水道, 汚物處理, 道路, 淨化槽施設 및 어린이 놀이터, 綠地, 公園의 確保問題이다.
住居環境은 自然環境과 人工環境과의 關係를 根

本的으로 再檢討하여 後進性 脫皮에 邁進해야 할 時點에 있다.

自然의 循環 속에서만 人間生活이 許容되는 것은 아니지만 自然의 섭리를 터득하고 이를 우리 生活環境에 調和시켜 人工的으로 解決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地域計劃의 策定에 있어서 人間을 中心으로 한 生物集團과 그 生存環境이 좋아지도록 空氣, 물, 綠地로 廣域의 視點에서 環境容量을 檢討하여 解決하여야겠다.

그리고 기존 都市도 積極的으로 環境容量의 補強을 試圖하는 한편 環境技術問題를 專門家에 의해서 研究檢討되어야 할 問題일뿐 아니라 새로이 開發되는 住宅團地와 都市計劃에 있어서는 都市計劃家와 造景家의 積極的인 참여와 研究가 되도록 政府의 施策과 支援이 要請되는 바이다.

2. 造景要素와 視覺判斷

造景要素는 두가지로 区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自然의 要素로서 生命이 없는 흙, 물, 물과 生命이 있는 自然植生일 것이고 自然要素라면 山野의 自然地勢나 地質 山頂이나 海岸의 기암, 유연히 흐르는 강물이나 계곡을 따라 구비치는 시냇물 그리고 生命이 있는 自然植生은 草本類나 지피식물을 비롯하여 상록관목, 활엽교목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심신 山谷의 老枯樹로부터 시작하여 도

시공원에 있는 다양한 화목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체는 人爲的 要素로서 各種建物 紀念塔, 彫刻, 石築, 鐵柵 등 이와같은 제 반 屋外의 人工施設物이다. 이와 같이 우리 周邊에서 무관히 보아왔고 언제나 밀접히 접해오던 여러 屋外 對象物들이 바로 造景의 重要な 要素들인 것이며 이들 각각의 要素나 綜合된 덩어리가 우리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景觀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造景要素의 特性과 自然이 지니고 있는 各種 要素와 人爲的인 構造物의 形態, 配置, 植樹 등에 대하여 그 특성이 우리 視覺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우리눈으로 보아 시작적으로 認知되며 이들이 서로 符合된 狀態에서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다음 7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位置, 規模, 色彩, 模樣, 線, 質感, 濃淡等이고 우리눈에 비친 對象物의 특성은 제각기 다르게 位置해 있고 크기나 色으로부터 시작해서 濃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相互 다르게 区分되며 수없이 많은 屋外에 있는 제반 造景要素들은 각각 단 하나도 서로 똑같지 않은 狀態에서 우리눈에 달리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要素들을 復合한 狀態가 곧 우리 주위의 景觀이 되므로 이들의 다양한 特性을 살려야 한다. 수없이 많은 造景施設을 관찰할 때마다 보고 느낄 때 때로는 극적적이고 환희스러운 기분을 돋구어주며 때로는 그와 반대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별로 유통되지 않은 무관한 경우 일수도 있다. 아주 적은 일이나 장난감을 우리가 살 때 아름답고 값싸고 튼튼한 것을 고르고 建築家가 住宅을 설계할 때는 저렴하고 견고하고 建物의 機能과 美를 빠트리지 않을 것이다.

造景을 가꾸는데도 이와 같은 要素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더욱 학술적으로 전문화되어 色彩와 色感, 形態, 線, 質感, 濃淡이 調和를 이루므로서 造景美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造景要素의 構成을 살펴보면

- (1) 계속적인 반복에 의한 지루감.(Monotony)
- (2) 조 화 (Harmony)
- (3) 대 비 (Contrast)
- (4) 불일치 (Discord)
- (5) 균 형 (Balance)

이러한 原理를 잘 適用하여 各造景要素의 特色의 우열을 하나하나 檢討하여 이를 造景計劃에 반영하여 實効를 거두기 바라며 目的에 符合되고 特性이 있어야 하겠다.

3. 造景計劃을 위한 基礎調査

(1) 目的에 관한 調査

目的으로 하는 造景에는 각기 알맞는 행동감정이 있으며 그것에 알맞지 않는 環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목적하는 바에 따르는 각종 造景 環境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다.

말을 바꾸어 어떤 주어진 環境條件에 대한 造景 目的의 결정이 어려울 때 環境調査를 실시함으로써 알맞는 造景目的을 찾아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造景目的에 대한 調査는 主目的 副次的目的 規模, 嗜好, 要求事項 등에 걸쳐서 되도록 상세하게 알아내서 아래에 적은 각종 항목의 調査範圍를 정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目的의 大要 또는 細部的인 면에 對한 變更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2) 人文環境의 調査

(A) 利用者の 實態 ; 目的으로 하는 造景物을 利用하는 者의 행동과 感情傾向(직업, 연령, 남녀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에 대하여 條件이 가까운 같은 종류의 造景의 成功 및 失敗例를 調査하는 同時에 當면한 계획자에 대한 利用者の 數年間의 動態와 推移를 調査한다. 이때 交通과 産業 및 行政 등 利用者 動態에 關聯되는 각종 要素

를 아울러 조사해 둔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統計
치의 分析은 社会心理学者 教育学者 環境衛生学者
는 물론 기타 政治, 經濟, 交通 등 관련성이 있는
전문기관과의 共同調査 및 討議를 할 것이 바람직
한 일이다.

(B) 法律에 의한 制限区域 : 公園法, 都市計画法,
山林法, 道路法 등에 따르는 施工制限區域의 경계
를 파악한다. 이것으로 施設種類, 規模, 構造, 面
積比率, 山林作業種, 立木伐採 등에 대한 제한범위
를 알아둔다.

(C) 週圍의 環境 : 土地所有別境界 부근의 각종
構造物, 居住者の 종류와 성질, 交通問題 및 유사
한 造景計劃의 有無 등에 대한 조사를 아울러 실시
한다. 이 조사는 公共道路와의 結合 및 기타의 땅,
가름계획, 展望에 대한 手段 防火防風, 防震, 防音
등의 防災의 手段 利用者의 도입수단 출입방법 등
은 물론 나아가서는 장래계획의 가능성에 대한 立
案上 重要한 참고자료가 된다.

(D) 歷史的 遺物 : 名所 古蹟 등 文化的 遺産이
될 紀念物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각종 遺物이 公
園化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며 또한 造景施工地
內에 있어서의 展望 및 動線의 결정에 밀접한 관
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 豫算에 관한 調査 : 調査事業에 주어지는
총예산액이 정해지면 항목별로 대체적인 概算을
해 본다. 그것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確保植物
의 종류, 크기, 수량, 및 가식장소 또는 집하장소
에 있어서의 상태, 비치공구 및 구입하여야 할 자
중재로, 그 구입처, 구입방법 시가 등에 대해 조
사하고 필요한 技術者와 勞務者의 수급능률, 技術
의 우열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사해 둔다. 조사결
과에 따라서는 計劃方法, 施工時期, 工法 등이 변
경되기도 한다.

(3) 自然環境에 대한 調査

(A) 方位 : 측량도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없을 때에는 나침반으로 調査한다. 方位는 施設物
이나 식재의 위치와 방향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다.

(B) 氣象條件 : 平均氣溫 격차, 風向, 風速 季
節風의 방향, 일조, 始霜日, 終霜日, 月雨量, 降雪
量, 집수면적, 流量, 流向等 각종 氣象因子를 調
査하여 식재계획 및 구조물의 형태 및 위치 결정
에 참고로 한다.

(C) 土壤條件 : 土色, 土壤의 層位, 腐蝕의 형태,
土性 土壤의 구조, 地下水位의 분포, 土壤養分의
多過, 母岩等 土壤條件에 대한 調査는 氣象條件에
대한 調査結果와 아울러 식재의 종류, 方法, 工事
期間 造景工作物의 위치와 구조에 많은 영향을 준
다.

(D) 地形條件 : 산, 언덕 河川, 폭포, 계류, 호
수, 池沼, 습지, 草原, 山林, 평단지, 섬, 바다, 물
굽이 등의 性質 및 狀態를 調査한다. 狀態에 대한
調査는 일반적으로 測量圖를 보아 파악한다.

(E) 植生 : 부근에 재생하는 식물의 群落 構造
를 大面積인 경우에는 군종에 의한 분류로 하고
小面積일 때에는 群落構造로 파악하고 또한 遷移
의 방향을 군산구조의 조사로 알아둔다. 이때 植
生을 서식처로 하는 소동물의 生態도 아울러 조사
해 둔다. 이와같은 조사로 造景予定地 부근의 生
物氣候를 알아 配植計劃 수립의 참고로 하는 동시
에 扞伐, 부분적 벌채의 가능성, 관리상 영향을
미치는 자연 평형에 대한 각종 施設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얻는다. 조사한 植生의 특징은 측량
도에 기입해 두도록 한다.

(4) 測 量

넓은 면적에 걸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1/50,000

~1/3,000(등고선 20~5m)의 地圖를 가지고 주요 지점의 踏査를 행하여 計劃地內의 대체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制限區域, 所有別境界, 地勢의 要点(평단지면적, 샘이 나는 장소등)바람의 方向, 시점, 시각, 現地勢와 地圖와의 相異點(기입되어 있지 않은 오솔길, 신작로 시설물 등) 식생의 개항 지반이 연한 場所, 利用者들이 찾아다니는 코스 流動量等을 地圖上에 기입하는 동시에 중요개소의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여 計劃者와 그 週邊環境의 주요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에 보다 세밀한 檢討를 가하고 또한 造景目的에 符合된 設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1/1,000~1/600(등고선 5.0~1.0m) 축척의 測量圖를 작성한다.

나무 하나하나를 다루는 배식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1/200~1/50(등고선 1.0~0.5m) 축척의 圖面이 필요하고 방대한 造境計劃의 경우에는 부분 마다의 測量圖를 필요로 한다.

土地의 所有別 境界는 문제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등기부를 참조하는 동시에 所有者를 입회시켜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測量方法을 가장 간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콤팩스와 測定器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평판測量과 레벨測量 및 경위거측량, 視距測量등이 실시된다. 면적이 작아서 高低만이 문제가 될 때에는 간략하게 핸드레벨을 사용하기도 한다.

造景測量을 실시하는 경우 指示해야 할 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目的하는 바에 따라 測量하는 방법을 결정짓는다.

(B) 전투선을 절제해야 할 때에는 造景上 利用할 수 있는 수목은 되도록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다쳐서는 안될 나무의 종류와 그 크기를 지시하고 때로는 해당되는 나무에 표시를 하여 測量

關係者에게 남기지킨다.

(C) 造景計劃 수립상 참고가 될 巨木, 重要수목, 바위, 地形, 植物群落의 범위, 샘, 電柱등의 地上物은 반드시 그 위치를 測量해 둔다.

(D) 특히 展望 또는 施設物 配置上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지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測點을 잡아 세밀하게 測量한다. 급한 골짜기나 습지 등 造景上 과히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製圖할 수 있는 정도로만 測定을 잡는다.

(E) 測量作業中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視點, 視覺 視野의 狀態등을 스캐치에 기입해 두었다가 製圖할 때 도면상에 기입토록 한다.

(F) 풀, 연못, 또는 기타 施設로서 절토나 성토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곳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5~10m 마다의 縱橫斷의 測定을 잡는 동시에 그 線上의 地形의 변화점은 모조리 測量하여 地形變更計劃의 참고자료로 삼는다. 기타 工事進行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고 언제든지 비교적 고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지점에 기점을 잡아 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며 岩盤이 얇은 경우에는 측점 마다 점토상으로 토양깊이를 측정하여 암반자도를 작성해 두면 식재계획 수립시 많은 참고가 된다.

(5) 立 案

우리는 基礎調査에 의해서 目的으로 하는 리크레이션 행동과 그 時代感情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 生活空間이 가져야 할 實用的, 防災的 및 衛生的인 각종 성질을 알게 된다. 또한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해야 할 自然環境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制約點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制約點을 충분히 살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制約을 극복하여 아름답고 유풍한 造形美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와 같은 制約의 性質과 이것을

극복하는 수단속에 造景의 限界가 제시되고 또한 造景의 재기가 存在하는 것이다.

즉 目的으로 하는 리크레이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리듬을 파헤쳐 이것을 造景材料로 造形하여 具體化하는 것이 바로 造景이다.

造景에 있어서의 機能은 단순한 藝術主義나 經濟的實用主義에 의한 것은 아니다. 行動의 리듬과 조음의 간극도 없이 生活環境이 組織化되었을 때에 美的 感覺이 最高로 발달되며 아울러 實用的 要求가 充足될 때 綜合的으로 그 實用性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리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時代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問題意

識을 항상 염두에 두고 基礎調査를 실시하고 그 時代의 사람들의 生活의 歷史的 動態에 주위를 기울이는 한편 관계되는 각 造景分野의 경향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구체적인 創作經驗을 쌓아 올리고 항상 反省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은 分析과 綜合을 되풀이 하는 동안에 스스로 길이와 넓이를 가진 안목이 생겨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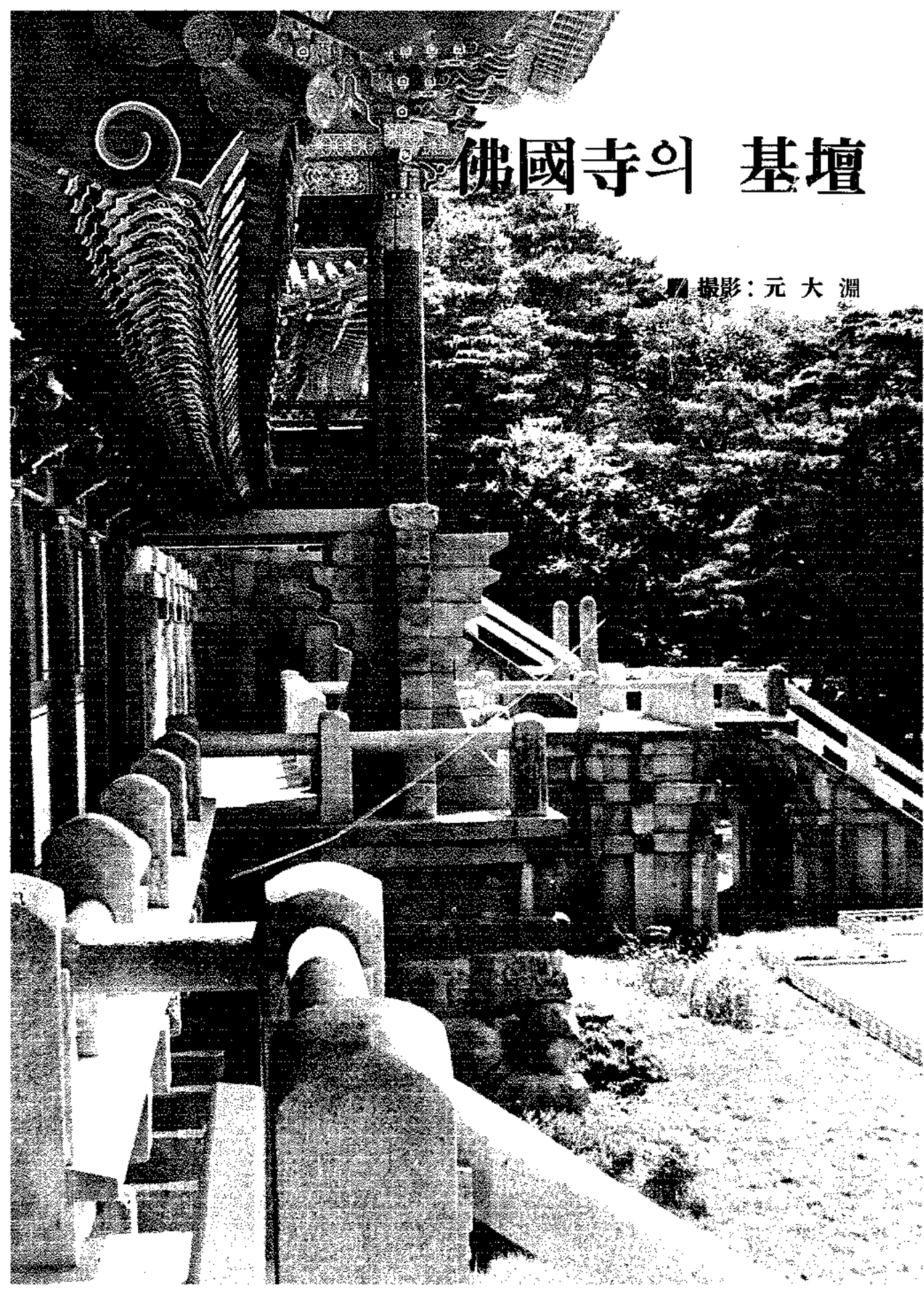
立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리듬을 파악하는 일이다. 造景計劃은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形態로 具現시키는 作業이다. 이상은 造景目的을 위한 第一段階의 作業이며 바로 基本計劃에 관한 調査事項이다. ■

■ 알 림 ■

이번 8月號 會誌는 9月1日부로
公布된 建築法施行令 全文 180條를
총 54페이지로 全載하므로 부록이
紙面관계로 이미 수집된 原稿, 會員
作品, 海外建築 등을 전부 게재 못
하고 다음 9月號에 게재하게 되었
음을 會員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編輯者)

佛國寺의 基壇

■ 撮影：元 大 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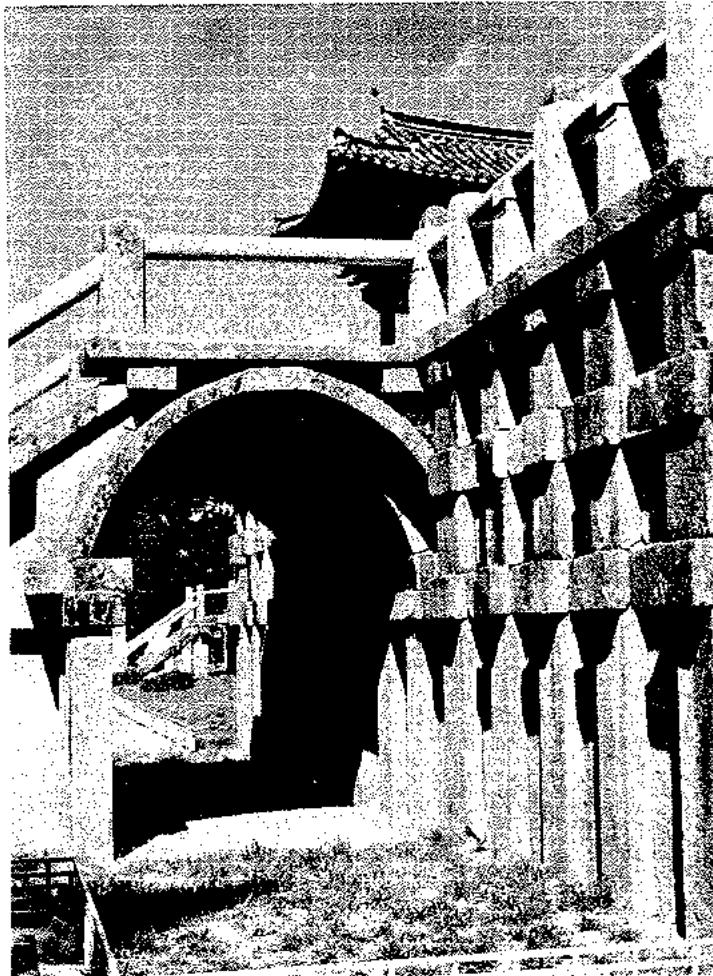
佛國寺의 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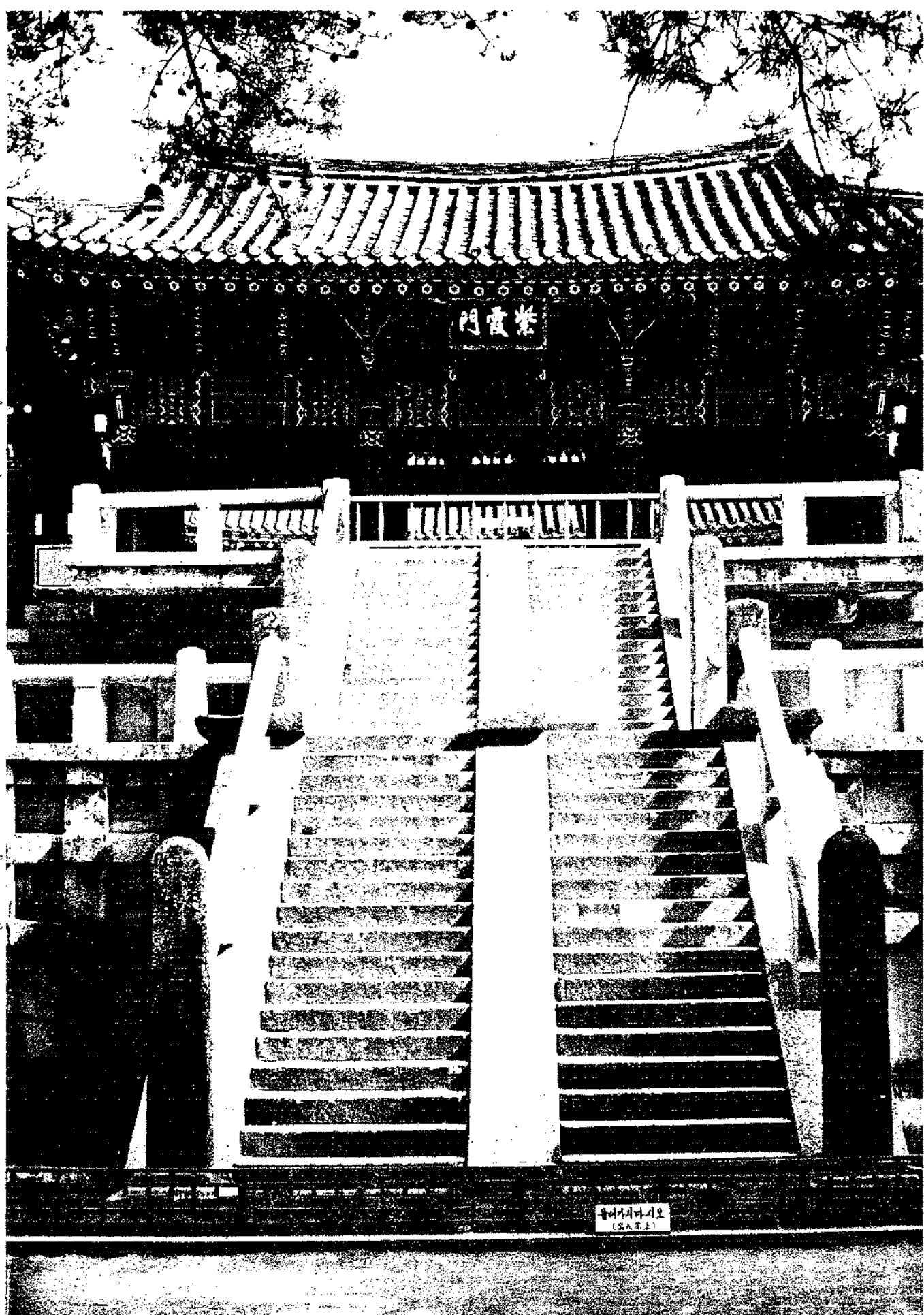
佛國寺는 넓은 高臺 위에 세워져 있어 이 高臺는 두단의 基壇을 形成하고 있다. 中壇은 步廊으로서 石造 난간이 둘러져 있다.

이 石造로 된 基壇의 構造는 架構式 構造形式으로 되어 있어 上部의 木構造와 잘 調和를 이루고 있으며 精巧하고 優雅하여 우리 祖上들의 솜씨에 재삼 경탄케 한다.

靑雲橋 및 白雲橋

紫霞門으로 이르는 두개의 石橋가 있어 밑의 石橋를 白雲橋, 위의 石橋를 靑雲橋라고 부른다. 이 石橋의 밑은 세줄의 아치로 支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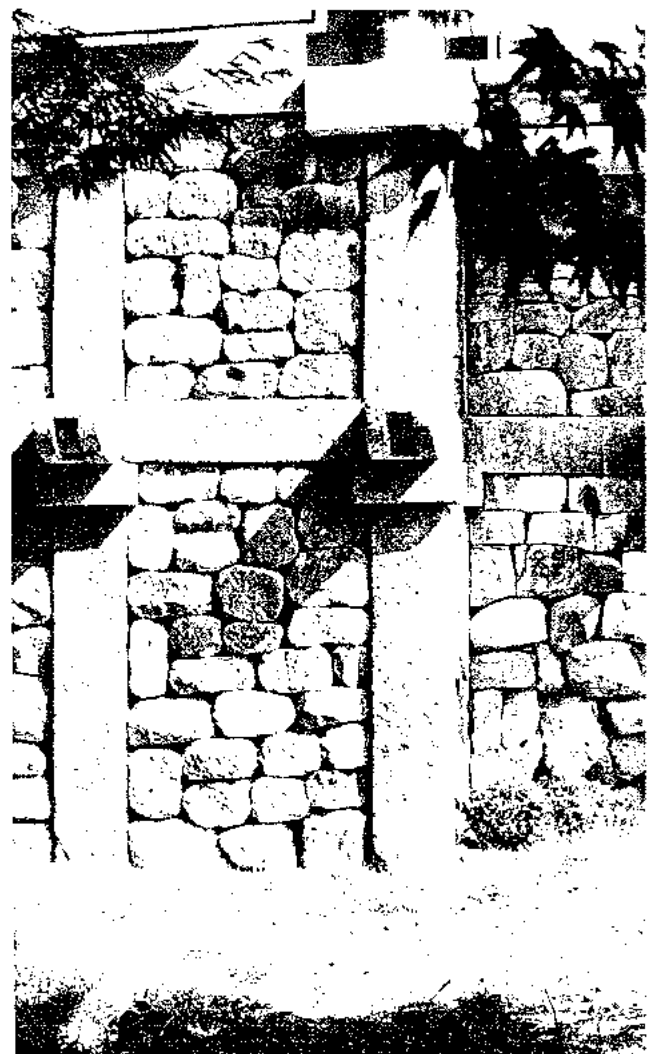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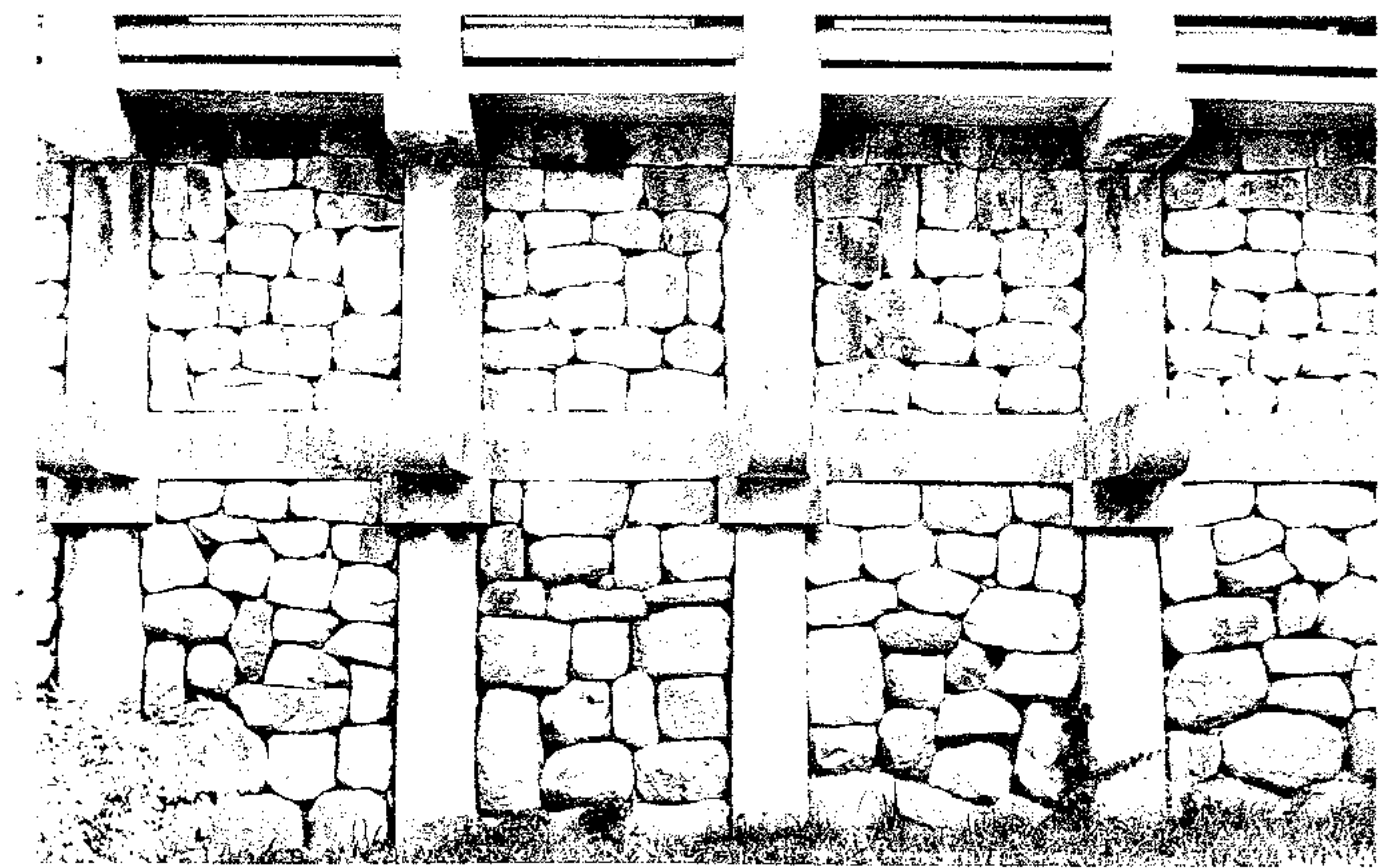
紫霞門

물어가지마시오
(SA 405)



基壇의 石築構造는 架構式構造로 된 石柱와 石梁 사이에 乱石으로 채워져 있는 特異한 構造로 되어 있다. 이 柱石과 梁石 사이에 끼여져서 突出된 石材는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 이 石築을 垂直으로 쌓는 것을 可能케 하고 있다.

上部의 突出石은 步廊을 支持하며 모양도 角形인데 비해 下部의 突出石은 끝부분이 円形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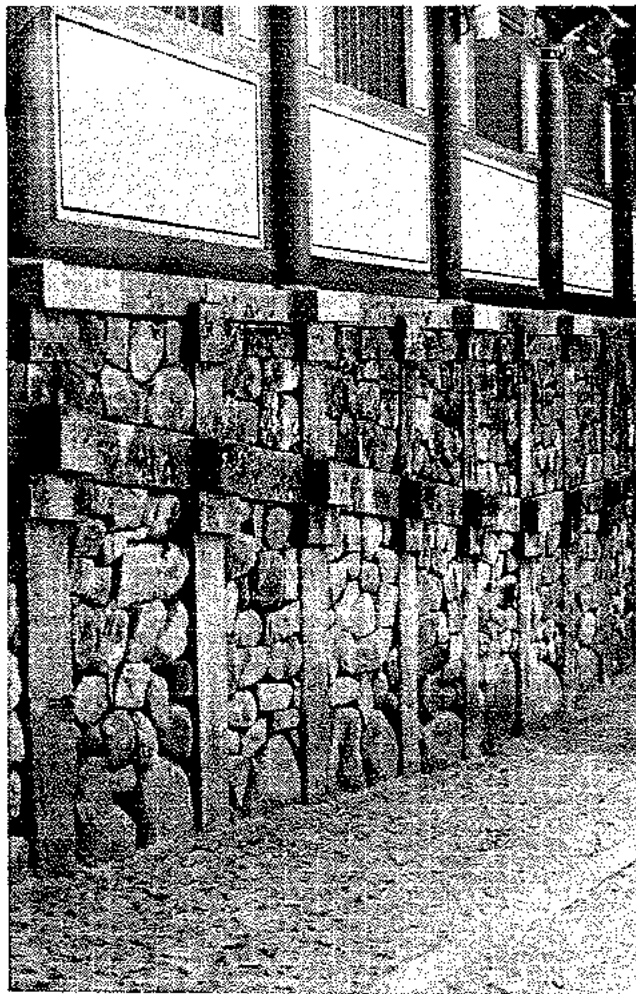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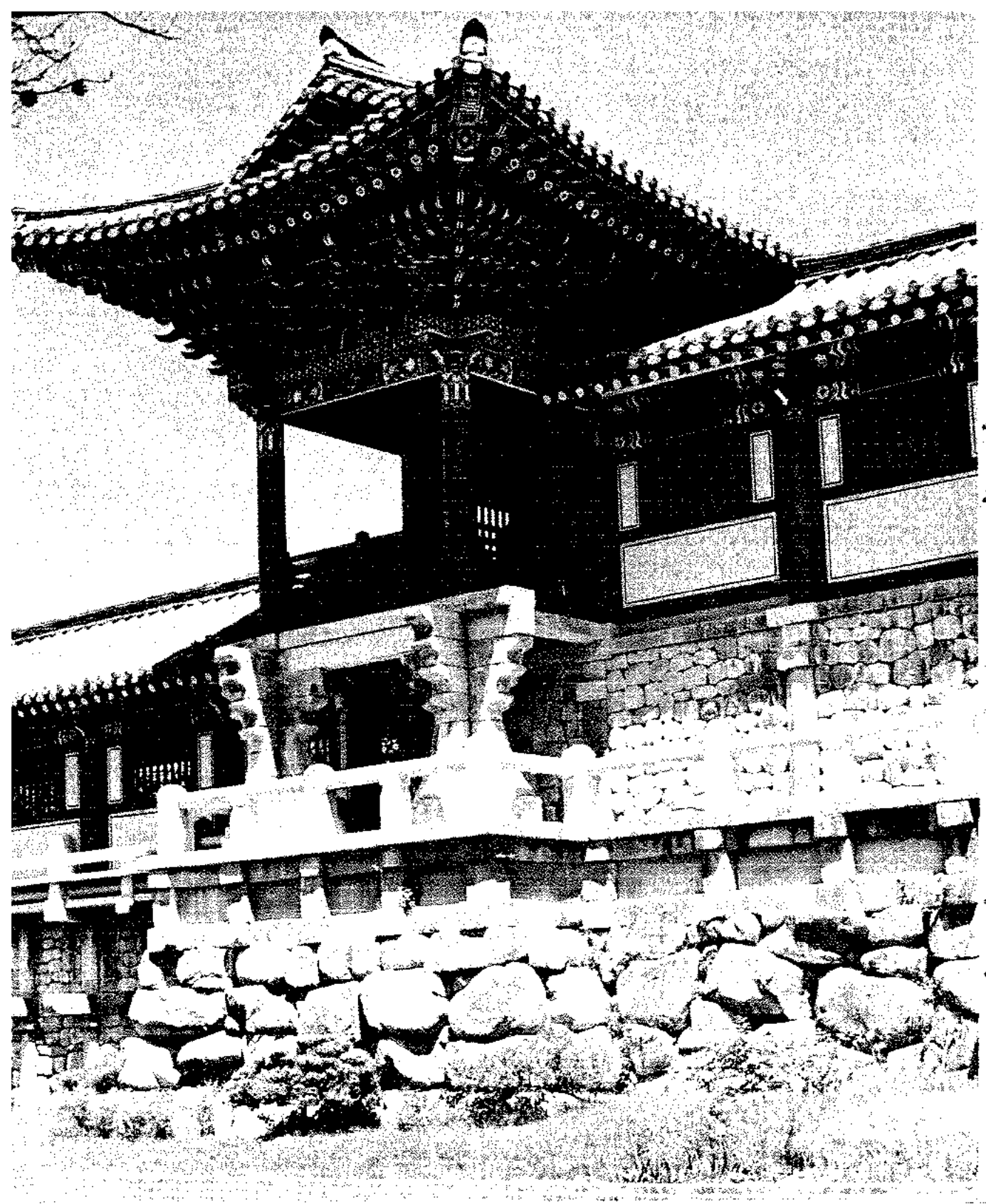


步廊의 集水口

中壇의 步廊에는 여기의 빗물을 한데 모아 흘러 내리게 하는 集水口가 中央에 突出되어 位置하고 있다. 이 集水口의 形態가 꽤 재미 있으며 이곳을 통해 흘러 내리는 빗물들은 그 밑에 자갈을 깔 곳을 통해 下水構로 연결된다.



基壇下部 傾斜진 道路와 調和되기 위해 中央部의 石梁이 道路에 따라 같은 傾斜를 이루고 있다.



涵影樓의 基柱

断面十字形の 基柱로 되어 있어 上部와 下部가 넓으며 아름다운 曲線을 이루고 있다.



安養門과 石橋

建築法規 問題選 ①

昨年末 改正되고 公告 6 個月後인 今年 7 月 1 日부터 施行된 建築法の 施行令이 뒤늦게 8 月下旬이 되어서야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公告하게 되었다. 우리 建築士들은 하루속히 改正된 建築法規의 內容을 익히고 그 취지를 理解해서 建築文化發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改正建築法規의 施行을 機會삼아 우리 建築人들이 改正된 條項 뿐만 아니라 建築法規 全般에 걸쳐 다시한번 各自의 知識을 確認하고 實力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害를 지 않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筆者가 그동안 建築法規講義를 위해 準備하였던 問題들을 改正建築法에 따라 補完하여 가면서 正答과 함께 提供하고자 한다. 讀者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다.

韓 鼎 雙

(韓國住宅銀行 技術部長)

問 다음 記述中 建築法規上 옳은 것에는 ○표, 틀리는 것에는 ×표를 하라.

- 1) 建築法은 都市計劃區域안의 建築物에 對해서만 適用한다.
- 2) 한 垵地안에 2 世帯分의 住宅 2 棟을 建築할 수 없다.
- 3) 高架道路밑에 設置하는 店舖는 建築物이 아니다.
- 4) 鐵道線路부지안에 있는 給水 給炭施設은 建築物이 아니다.
- 5) 記念塔은 特殊建築物이다.
- 6) 우편물 수취함은 建築設備다.
- 7) 천정의 높이가 2.4m이고 그 바닥에서 地表까지의 높이가 1.2m인 層은 地下層이다.
- 8) 부엌은 居室이다.
- 9) 基礎는 主要構造部가 아니다.
- 10) 耐火構造는 防火構造보다 火災에 對하여 더 安全한 構造다.
- 11) “建築面積”은 建築物의 各層 “바닥面積”中 가장 큰 것을 말한다.
- 12) 노대(발코니)의 바닥面積은 바닥面積에 算入되지 않는다.

- 13) 피로티의 部分은 바닥面積에 算入하지 않는다.
- 14) 경지붕 建築物의 난간벽(파라벨)은 건축물의 높이에 算入하지 않는다.
- 15) 組積造建築物의 처마높이는 팔도리밑 까지를 말한다.
- 16) 승강기탑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8 分の 1 이하이면 그 높이가 12m를 넘지 않을 때에만 층수에 算入하지 않는다.

正 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防火에 關한 規定에 必要해서 主要構造部의 用語를 定義하고 있기 때문에 基礎는 除外되어 있다) 10) ○ 11) × 12) × (改正 施行令에 따라 算入되는 경우가 있다) 13) × (改正 施行令에 따라 公衆의 通行에 利用되는 경우에만 算入되지 않는다) 14) × (改正 施行令에 따라 그 벽면의 面積의 1/2 이상이 공간일 때만 算入하지 않는다) 15) × 16) × (높이에 關係없이 層數에 算入하지 않는다)

建築法 施行令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제 3 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 제 4 조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의 준용
- 제 5 조 직권의 위임
- 제 6 조 건축허가
- 제 7 조 공사감리자
- 제 8 조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 제 9 조 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 제 10 조 중간검사
- 제 11 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 2 장 일반구조

제 1 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 제 12 조 거실의 채광
- 제 13 조 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 방법

제 2 절 거실의 반자높이,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 제 14 조 거실의 반자 높이
- 제 15 조 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 제 16 조 은들의 구조 등

제 3 절 계단

- 제 17 조 계단의 치수
- 제 18 조 계단감의 위치 및 너비
- 제 19 조 계단 및 계단감의 난간
- 제 20 조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 제 21 조 복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 4 절 주차장

- 제 22 조 주차장 설치기준

제 3 장 구조강도

제 1 절 총칙

- 제 23 조 구조설계의 원칙
- 제 24 조 구조부재의 배구
- 제 25 조 마손의 방지
- 제 26 조 장벽 및 기와 등의 진결
- 제 27 조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 2 절 목조

- 제 28 조 적용범위
- 제 29 조 목재
- 제 30 조 토대
- 제 31 조 기둥의 소경
- 제 32 조 보류의 횡가재

- 제 33 조 가새
- 제 34 조 골구 등
- 제 35 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 제 36 조 외벽 내부 등의 방부 조치
- 제 37 조 불임물 등

제 3 절 조적조

- 제 38 조 적용범위
- 제 39 조 시공
- 제 40 조 기초
- 제 41 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등
- 제 42 조 내력벽의 두께
- 제 43 조 간벽 등의 두께
- 제 44 조 외량
- 제 45 조 개구부
- 제 46 조 벽의 흠
- 제 47 조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 제 48 조 난간 및 난간벽
- 제 49 조 조적조의 담
- 제 50 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 제 51 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 4 절 보강 콘크리트 불록조

- 제 52 조 적용의 범위
- 제 53 조 시공
- 제 54 조 기초
- 제 55 조 내력벽
- 제 56 조 외량
- 제 57 조 보강콘크리트 불록조의 담
- 제 58 조 준용규정

제 5 절 철골조

- 제 59 조 적용범위
- 제 60 조 재료
- 제 61 조 압축재의 유효세장비
- 제 62 조 기둥의 밀통
- 제 63 조 접합
- 제 64 조 리벳트 및 볼트
- 제 65 조 사개, 벽 등의 배치
- 제 66 조 구조부재의 방청

제 6 절 철근콘크리트조

- 제 67 조 적용범위
- 제 68 조 콘크리트의 재료
- 제 69 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 제 70 조 콘크리트의 배합
- 제 71 조 콘크리트의 양생
- 제 72 조 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 제 73 조 기둥의 구조
- 제 74 조 보의 구조
- 제 75 조 바닥판의 구조
- 제 76 조 철근의 피복 두께

제 7 절 무근콘크리트조

제77조 무근콘크리트조에 대한 다른 구조 규정의 준용

제 8 절 구조계산

제1관 총 칙

제78조 적용범위

제79조 구조계산의 원칙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80조 구조계산에 채용하는 하중 및 외력

제81조 고정하중

제82조 적재하중

제83조 적설하중

제84조 풍압력

제3관 허용응력도

제85조 목재

제86조 철재

제87조 콘크리트

제88조 용접

제89조 지반

제 4 장 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 등

제90조 안전, 방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제91조 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제92조 내화구조

제93조 방화구조

제94조 방화문 기타의 방화 설비

제95조 방화문의 구조

제96조 방화구획

제97조 방화벽

제98조 방화지구와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 제한 등

제99조 건축물의 계벽, 간벽 및 격벽

제10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 5 장 피난시설 등

제 1 절 복도, 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1조 적용범위

제102조 객석으로부터의 출구

제103조 복도의 폭

제104조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제105조 2 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제106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07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8조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제109조 옥외로의 출구

제110조 옥상광장

제 2 절 대지 안의 피난상,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2조 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 안에 있어서의 통로

제 3 절 지하층

제113조 지하층의 설치

제114조 지하층의 구조

제 6 장 건축설비

제 1 절 총칙

제115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16조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 2 절 배관설비 등

제117조 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

제118조 난방설비

제119조 상·하수관 등의 설비

제120조 소화 설비

제 3 절 변소

제121조 변소의 제광 및 환기

제122조 재거식 변소의 구조

제123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제124조 개량변소

제125조 수세식 변소와 오물 정화조

제126조 누수 방지

제127조 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 4 절 승강 설비

제128조 적용범위

제12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13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131조 승강기 등의 구조

제132조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제133조 에스캐레이타의 구조

제 5 절 전기·통신 및 기타 설비

제134조 비상조명장치

제135조 통신 설비

제136조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

제137조 국기계양대의 설치

제 7 장 도로 및 건축선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 제139조 특수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제14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제141조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 위치의 지정

제 8 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 제142조 지역내의 건축물
- 제143조 공원경역 및 예정지 내의 건축물
- 제144조 풍치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45조 미관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46조 고도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47조 교육 및 연구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48조 업무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49조 임항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0조 공치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0조 공치 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1조 보존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2조 특정가구정비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3조 주차장 정비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4조 공항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5조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6조 기타의 지구 내의 건축제한
- 제157조 적용의 특례
- 제158조 전폐율의 완화
- 제15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제160조 용적률
- 제16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162조 정비된 가구 내의 완화
- 제163조 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 제164조 공원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 제165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안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완화
- 제166조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 제167조 인접대지 내의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168조 주거전용지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제10장 감독

- 제169조 손실보상
- 제170조 건축허가의 제한
- 제171조 건축위원회
- 제172조 승인

제11장 잡칙

- 제173조 재해구역 지정의 고시
- 제174조 가설건축물
- 제175조 응벽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
- 제176조 굴착
- 제177조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
- 제178조 응벽 및 담
- 제179조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활용
- 제180조 적용의 특례

부 칙

- ① 시행일
 - ② 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 ③ 피난, 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④ 지역 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 ⑤ 지역 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 ⑥ 지역 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 ⑦ 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별표 1) 주거전용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3)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4)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5) 전용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建築法 施行令

◎대통령령제6, 834호
공포 1973년 9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바닥면적·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그 위치에 이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

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물·토대·사재(가새·버림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의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린벽”이라 함은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목조시멘트판·석고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전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난연재료”라 함은 난연합판·난연도락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난연성의 재료로서 전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규격화된 재료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주택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제3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차마·차양·

부연·켄티베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켄티베바구조의 건축물로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을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육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접하는 대지부분의 전면도로부분의 평균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전면도로면간에 1미터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면도로면이 그 고저차로부

터 1미터를 감한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상승(도로면이 높은 경우에는 하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 계단실·승강기탑·장식탑·광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붕마루장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 돌출부와 난간벽(그 벽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들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직상층 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8. 층수: 승강기탑·장식탑·광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써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공정으로 되어 있거나 기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

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한다.

③제 1항제 5호다목 또는 제 8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 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 4 조 (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준용) ①법 제 3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 이내의 구역.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고 시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

②법 제 5조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 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 5 조 (직권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 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2조제 15호나목·제 5조·제 6조제 3항·제 7조·제 7조의 2·제 7조의 3제 2항·제 8조·제 9조의 2제 2항·제 42조제 1항제 1호·제 4호 및 동조제 4항·제 43조와 제 4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5층 이상인 건축물과 미관지구 및 특정가꾸경미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건축허가) ①법 제 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서울특별시·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 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은 법 제 5조단서의 규정에 의

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공사감리자) 법 제 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면적을 15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층마루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 8 조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법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서와 법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법 제 7조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가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 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정하고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건축물(동일대지안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중간검사) ①건축주는 법 제 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은 기초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와 육상층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기초의 흙막이를 완료한 때와 지붕구조체공사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 또는 동일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서의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절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축주에게 전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축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복공사 및 철근공사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시장·군수가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전설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관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12조 (거실의 채광)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병원·진료소·기숙사 또는 여

관에 있어서의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의 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은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실의 종류	비율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실	5분의1
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실	7분의1
기숙사 또는 여관의 침실	7분의1
학교·병원·진료소·기숙사 또는 여관의 기타의 거실	10분의1

②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차면상 유효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그 개구부 상부에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개구부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후퇴 또는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며, 투명의 차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차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그 부분에 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를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까지의 수직거리로 나눈 비율이 다음 표의 비율 이상인 것

지역 또는 구역의 구분		비율
(1)	주거전용지역, 녹지지역	10분의 5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0분의 4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10분의 2.5
(4)	상업지역·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10분의 2

2. 제 1호의 표의 (3)번 또는 (4)번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정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써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 이상인 것.

3. 도로·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면하는 것.

②천장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 18조제 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구부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 18조제 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 2절 거실의 반자높이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제 14조 (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 (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건축물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높이는 그 밑의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 이내마다 면적 300평방센티미터 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할 것.

제 16조 (온돌의 구조등) ①법 제 23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온돌의 고래밑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끌언턱을 설치할 것.

3. 온돌의 골목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 이상의 스테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제 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 기타 기술적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3절 계 단

제 17조 (계단의 치수) ①계단 및 계단참의 폭·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 및 계단참의 폭은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1) 국민학교의 학생용계단	140이상	16이하	26이상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 계단이나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 계단	140이상	18이하	26이상
(3) 지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지상층의 계단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지하층의 계단	120이상	20이하	24이상
(4) 기타의 계단	75이상	22이하	21이상

②돌출 계단부분에 있어서의 단너비는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제18조 (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①제17조제1항의 표중 (1)난 또는 (2)난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의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층 골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 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단에 배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배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8분의 1 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방루용 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주차장

제22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건축물 또는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그 대지의 토지이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층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500평방미터 이상인 극장, 영화관, 연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여관, 호텔, 음식점, 두도장, 찻, 카바레, 유키장, 공중목욕장, 공동주택, 체육관, 석화점, 사무소, 병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0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

2. 상업지역내에서 제1호에 개기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상업지역 이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50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구조장도

제1절 총칙

제23조 (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직설하중·풍압·토압·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에는 방부도료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 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위면 밑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마손의 방지)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서 특히 마손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장벽 및 기와등의 진갈) ①장벽은 골주에 진결하여야 한다.

②기와는 처마 및 박공의 끝부분으로부터 적어도 2열까지는 장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5장마다 1장씩을 동선·철선 또는 못 등으로 지붕널에 진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강식식·테라코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볼트·적쇠·동선 기타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골주 또는 벽에 진결하여야 한다.

제27조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조의 안전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목 조

제2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이나 목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인 광·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목 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더, 썩정이, 나무결의 경사, 죽 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 (토 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밑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을 기초에 진결하거나 단층의 건축물로서 미봉잡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토대는 기초에 진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기둥의 소경)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소경은 이에 정착하는 토대·밑둥잡이·층도리·보·도리 기타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횡가재의 상호간의 수직중심거리에 대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 속 물 기		기둥		기타의 기둥				
		건축물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기둥 상호간의 간격이 10미터 이상인 기둥이나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광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공중목욕장·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들의 기둥		최상층 또는 1층건축물의 기둥	최상층의 지하층의 기둥	기타의 층의 기둥	최상층 또는 1층건축물의 기둥	최상층의 지하층의 기둥
(1)	제8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다설구역안의 건축물이나 목조건축물로서 조적재를 사용한 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벽의 중량이 특별히 큰 건축물		22분의 1	20분의 1	18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20분의 1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지붕을 금속판·석판·석면판·목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경량재로 된 것은 건축물		30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35분의 1	30분의 1	25분의 1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5분의 1	2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②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접합부를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보통의 횡가재) 보·도리 기타의 횡가재에는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가 세)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나 지름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끝부분을 기둥과 보 거타의 횡
가새와의 맞춤부분에 접근하여 볼트·적쇠·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세는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구조내려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골구 등) ①구조내러상 주요한 부분인 벽·기둥 및 횡가새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에 건축물의 길이 방향 및 너비 방향으로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은 골구를

관한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배·비탈기둥 또는 비탈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꺾쇠·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방법에 의하여 그 부분의 극부응력을 전달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제36조 (외벽 내부등의 방부조치) (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포탈갈·불임폴조 기타 물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바탕재에 방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목조인 건축물로서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의 기둥·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스트 기타의 방부재를 발라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의 벽의 내부를 통기되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불임돌등) 불임돌 (불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조를 세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불임돌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적조

제38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조·석조·콘크리트블록조 기타의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조의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조의 구조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재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 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9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 아닌 조적조의 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

하여는 제39조·제40조·제43조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9조 (시 공) ①조적에 사용하는 벽돌(공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돌·콘크리트블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흙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로 추겨 조적하여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층은 도면의 전부에 골탈이 빠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골탈은 시멘트골탈로서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와 혼합된 시멘트골탈로서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1: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각층의 벽은 연실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제40조 (기 조)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초중 밀발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하고 밀발침 상부의 부분은 그 두께를 최하층 벽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①2층 또는 3층의 조적조인 건축물에 있어서 최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면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42조 (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제도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그 각상층의 내력벽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와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층별	건축물 높이 벽의 길이	5미터미만		5미터이상 11미터미만		11미터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1 층	총	15	19	19	30	30	40
2 층	층	—	—	19	19	19	30
3 층	층	—	—	19	19	19	19

②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력벽의 두께는 그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16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제 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 높이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 6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위 : 센티미터)

층 별	건축물의 층수	1 층	2 층	3 층
		19	30	40
2 층	층	—	19	30
3 층	층	—	—	19

⑥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벽돌 조적조로 할 수 있다.

⑦제 6항단서의 경우에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직상층의 벽 두께에 10센티미터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조적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 1항 내지 제 7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의 어느 한쪽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 건축물인 경우의 1층을 포함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두께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간격으로 지지 보강한 내력벽에 대하여는 그 각벽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48조 (간벽벽의 두께) ①조적조인 간벽(내력벽이 아닌 기타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인 간벽의 직상층에 조적조인 간벽이나 중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벽의 두께를 19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와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 42조제 1항·제 3항·제 4항(동항중 "제 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되"의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8항의 규정은 조적조인 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와 량)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 위에는 흙이 벽 두께의 1.5배이상인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 건축물로서 벽의 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의 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와량을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개구부) ①조적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기타의 개구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내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목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할 것.
2. 각 벽에 있어서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조적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 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내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목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적조인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의 조적조인 노후는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

고 또한 그 상부를 쌓아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목조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6조 (벽의 홈) 조적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7조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의 조적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구에 볼트·격쇠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제48조 (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와랑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지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49조 (조적조의 담) 조적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20센티미터(높이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배 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구조안전의 확인)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또는 건축물 높이 15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4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고 이절(제38조, 제1항단서·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4절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제52조 (적용의 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철근 콘크리트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53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 (시 공) 보강콘크리트블록조는 그 줄눈에 시멘트몰탈이 고르게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하며 철근을 넣은 공동부에는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제54조 (기 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 기초로 하되, 그 중 밑받침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 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내력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12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밑받침부분이나 와랑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56조 (와 랑)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층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

트조의 지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담)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센티미터(높이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담의 내부에는 가로·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담의 끝 및 모서리 부분에는 세로로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제58조 (준용규정) 제45조제2항 내지 제5항·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철골조

제59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조·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60조 (재 료) 압축응력 또는 접착응력이외의 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는 주철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인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기둥의 밀둥)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밀둥은 기초에 양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철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접 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서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리벳접합 또는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처마높이 9미터이하이고 경간 13미터이하인 건축물(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하거나 낫트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로서 교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철골재·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존재응력 전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음부분이 밀착되도록 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축력 및 휨모멘트의 4분의 1(기둥의 밀둥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를 집중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응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64조 (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중심 상호간의 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구멍에 충전되도록 처야 한다.

③볼트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밀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제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지붕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6조 (구조부재의 방청)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에는 녹이 쏠지 아니하도록 방청도료를 바르거나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제6절 철근콘크리트조

제67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3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 3미터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68조·제7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8조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모래·자갈·세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염·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2. 자갈 또는 세석은 경질로서 철근 상호간 및 철근과 거푸집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제69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끝부분은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려서 콘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기둥 또는 골뚝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지름(지름이 상이한 주근을 잇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고착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이 길이를 그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경량골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중 “25배”를 “30배”로, “40배”를 “50배”로 한다.

제70조 (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20킬로그램(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콘크리트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구조계산에서 취한 강도이상이 되도록 골재,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시멘트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축강도의 측정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시멘트의 배합비 및 물·시멘트비의 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1조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조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72조 (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거푸집 및 지주는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의 하중에 의한 변형·균열 기타 구조내력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의 강도로 응결 및 경화될때까지의 기간에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금지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양생환경 기타의 조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 (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하되, 가장 가는 주근의 지름의 15배이내로 할 것.
3. 기둥의 소경은 그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콘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제3호의 소경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단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그 소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제74조 (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늑근을 보의 층의 4분의 3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5조 (바닥판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콘크리트바닥판(현장 시공의 것에 한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바닥판의 두께는 8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당해 바닥판의 단면의 길이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최대 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면방향은 20센티미터이내,

장변방향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바닥판의 두께의 3배이내로 할 것.

제76조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 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내력벽·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티미터이상(육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회반죽바르기 또는 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술 한 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 이상), 직접 흙의 접한 벽·기둥·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티미터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림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절 무근콘크리트조

제77조 (무근콘크리트조에 대한 다른 구조 규정의 준용)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이 장 제3절(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 칙

제7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구조계산의 원칙)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관에 규정하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할 것.
2. 제1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에 생기는 장기 및 단기의 각 응력도를 다음 표에 개기하는 조합에 의한 각 응력의 합계에 의하여 계산할 것.

응력의 종류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상정하는 상태	일반의 경우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설 구역의 경우	비 고
장기의 응력	상	시 G + P	G + P + S	
단기의 응력	적 설 시	G + P + S	G + P + S + W	
단기의 응력	폭 풍 시	G + P + W	G + P + S + W	건축물의 전도 기둥이 뽑히는 등의 경우에는 P는 건축물의 실태에 따라 적재 하중을 감안 수치로 한다.

이 표에 있어서 G, P, S, W는 각각 다음응력(숙방항응력·휨모멘트·전단응력등의 각각을 말한다)을 표시한다.

G: 제81조에 규정하는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P: 제82조에 규정하는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S: 제83조에 규정하는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W: 제84조에 규정하는 풍압력에 의한 응력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가 각각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응력 및 단기의 응력에 대한 각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4.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의 변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제2관 하중및외력

제80조 (구조계산에 채용하는 하중 및 외력)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의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제 1 항에 계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수압·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81조 (고정하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거나 당해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1평방미터)

건축물의 부분	종	별	하	중	비	고
지 붕	기 와 지 붕	부토가 없는 경우	지붕면 에 대 하여	65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리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토가 있는 경우		100		
	석 면 스페르 지 붕	중도리에 직접 이는 경우		25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경우		35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리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골철판 지붕	중도리에 직접 이는 경우		5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얇은 철판지붕			20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리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리지붕			30	철계골을 포함하고 중도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후형 스페르 지붕			45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리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복조의 중도리	중도리의 지점간의 거리가 2미터 이 하인 경우		5		
		중도리의 지점간의 거리가 4미터이 하인 경우		10		
반 자	살대반자	반자면 에 대 하 여	10	달래·달래받이 기타의 바탕을 포함하 다.		
	섬유판반자, 널반자, 금속판반자, 합 판반자		15			
	목모시멘트판 반자		20			
	우물반자		30			
	회반죽 반자		40			
	돌탈 반자		60			

바 다	목조의 바 다	널바닥		바닥면 에 대 하여	15	장선을 포함한다.
		다다미바닥			35	바닥널판 및 장선을 포함한다.
		바닥보	경간 4미터 이하인 경우		10	
			경간 6미터 이하인 경우		17	
			경간 8미터 이하인 경우		25	
	콘크리트조인 바닥의 마감	널바닥			20	장선 및 장선받이를 포함한다
		후로엥 블록바닥			15	마감두께 1센티미터마다 그 센티미터의 수치를 곱한다.
		몰탈바닥 · 인조석바닥 · 타일붙임바닥			20	
		아스팔트 방수층바닥			15	
	벽	목조건물의 벽의 골구			벽면에 대하여	15
목조건축물의 벽의 마감		바늘판 붙임벽	10	벽바탕을 포함하고 골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루바 붙임벽				
		섬유판 붙임벽				
		줄대치반죽벽	35			
		천망몰탈벽	65			
목조건축물의 외벽		85	골구를 포함한다.			
콘크리트조인 벽의 마감		외반죽벽	17	마감두께 1센티 미터마다 그 센티미 터의 수치를 곱한다.		
		몰탈벽 및 인조석벽	20			
		타일붙임벽	20			

제83조 (적재하중)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당해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에 계기하는 거실등의 바

닥의 적재하중은 각각 (가) 난 또는 (나)난의 수치로 할 수 있다.

단위 : 킬로그램 / 1평방미터

구조제산의 대상 거실등의 증별		(가)	(나)
		바닥의 구조제산을 하는 경우	큰보·기둥 또는 기초의 구조제산을 하는 경우
(1)	주택의 거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침실 또는 병실	180	130
(2)	사무실	300	80
(3)	학교의 교실	230	210
(4)	백화점 또는 점포의 판매장	300	240
(5)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	고정적인 경우	300
		기타의 경우	360
(6)	자동차 차고 및 자동차 통로	550	400
(7)	복도·문간 또는 계단	(3) 난배지 (5) 난에 제기하는 거실에 통하는 것은 (5) 난중 기타의 경우의 수치로 한다.	
(8)	옥상평장 또는 노면	(1) 난의 수치로 한다. 다만, 학교 또는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4) 난의 수치로 한다.	

②기둥 또는 기초의 수직하중에 의한 압축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표중 (나) 난의 수치는 그 지지하는 바닥의 수에 따라 이에 다음 표의 수치를 곱한 수치까지 감할 수

있다. 다만, 동항의 표중 (5) 난에 제기하는 거실의 바닥의 적재하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지하는 바닥의 수	2	3	4	5	6	7	8	9 이상
적재하중을 감하기 위하여 곱할 수치	0.95	0.9	0.85	0.8	0.75	0.7	0.65	0.6

③창고에 있어서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황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평방미터에 대하여 4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도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경우에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티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2킬로그램(다설구역에 있어서는 3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 (적설하중) ①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③제 1항의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제 2항의 다설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붕의 적설하중은 지붕에 눈막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물매가 30도를 넘고 60

도 이하인 경우에는 물매에 따라 제 1항의 적설하중에 다음 표의 수치를 곱한 수치로 하고 그 물매가 60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 매	30도를 넘고 40도 이하인 경우	40도를 넘고 50도 이하인 경우	50도를 넘고 60도 이하인 경우
적설하중에 곱할 수치	0.75	0.15	0.25

⑤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의 적설하중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표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84조 (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속도압은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그 수치의 50퍼센트(다설구역에 있어서는 4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의 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있어서의 속도압을 정할 수 있다.

$$q = 50 \sqrt{h}$$

이 표에 있어서의 q 및 h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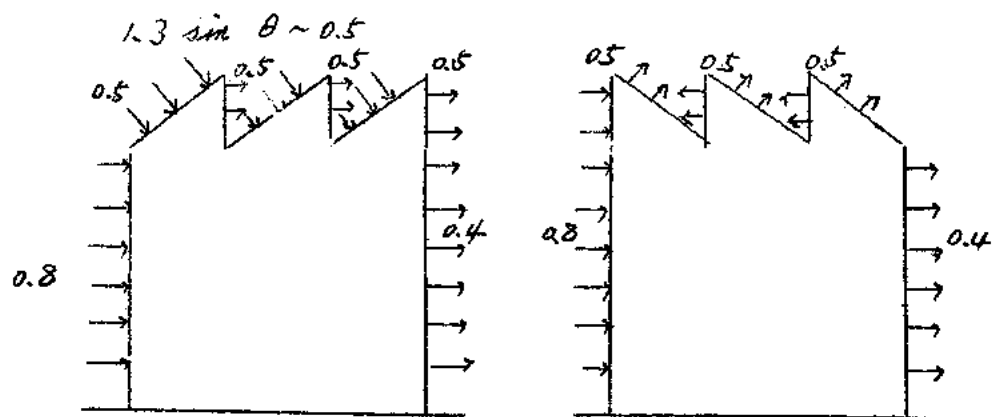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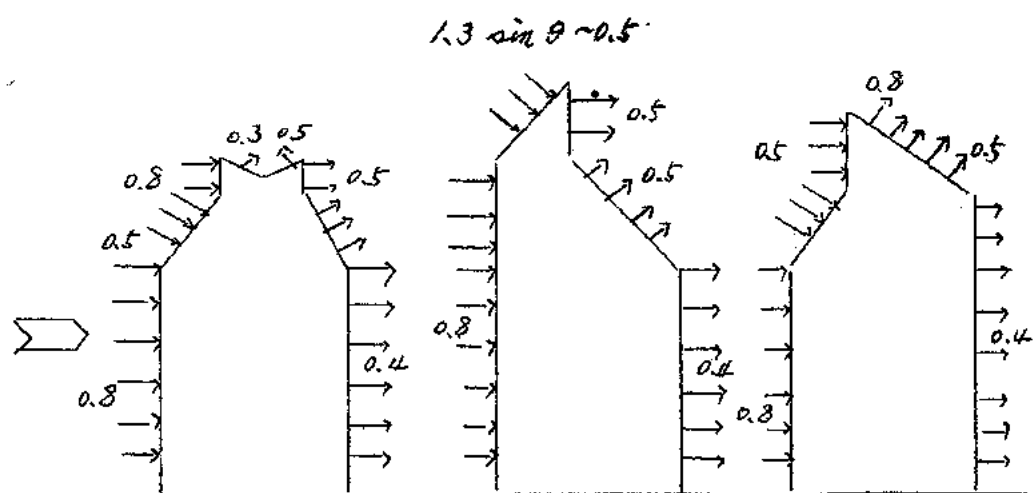
q : 속도압(단위 : 1평방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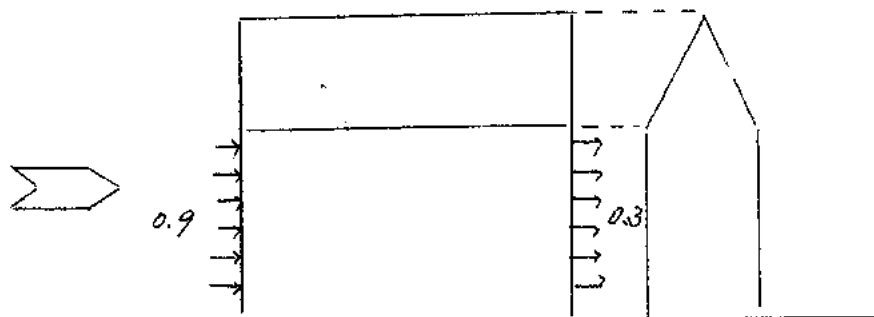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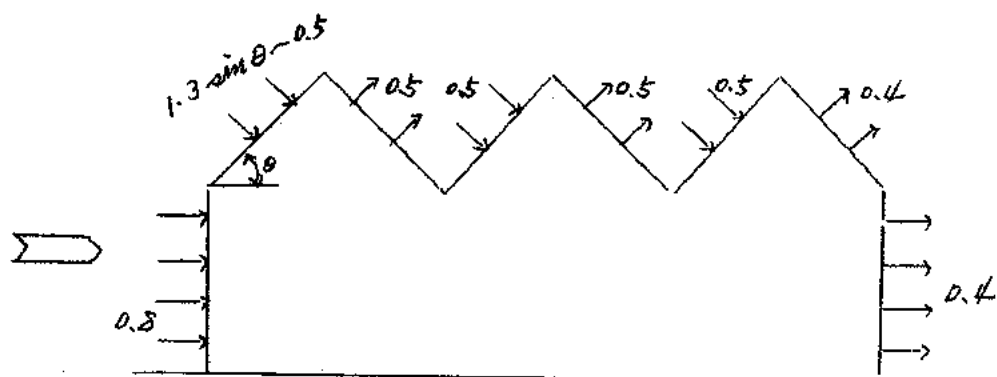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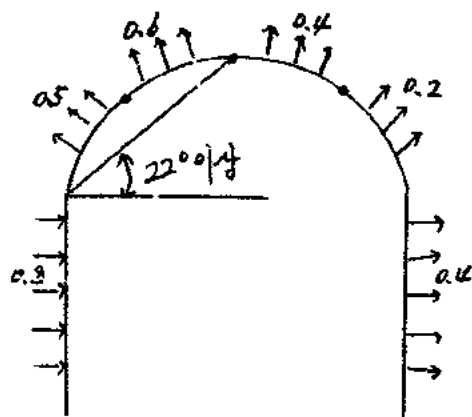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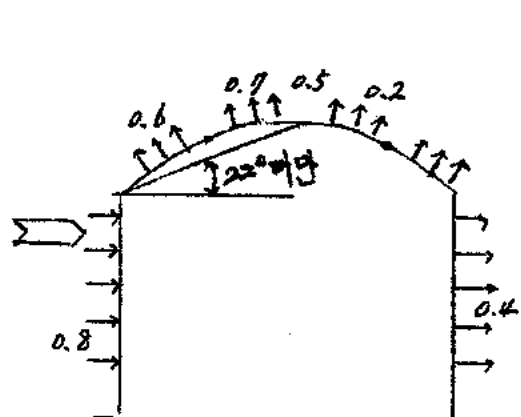
h : 지표면으로 부터의 높이(단위 : 미터)

③건축물이 해안·하안·산위·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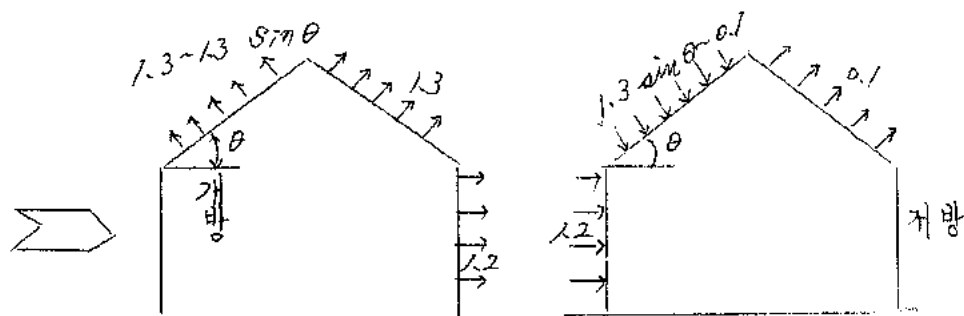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 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 도면에 개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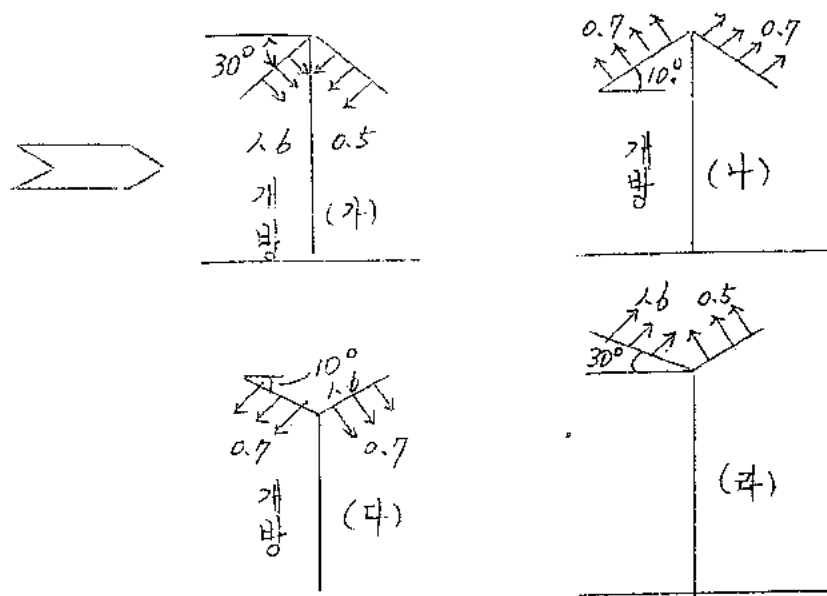




개방형의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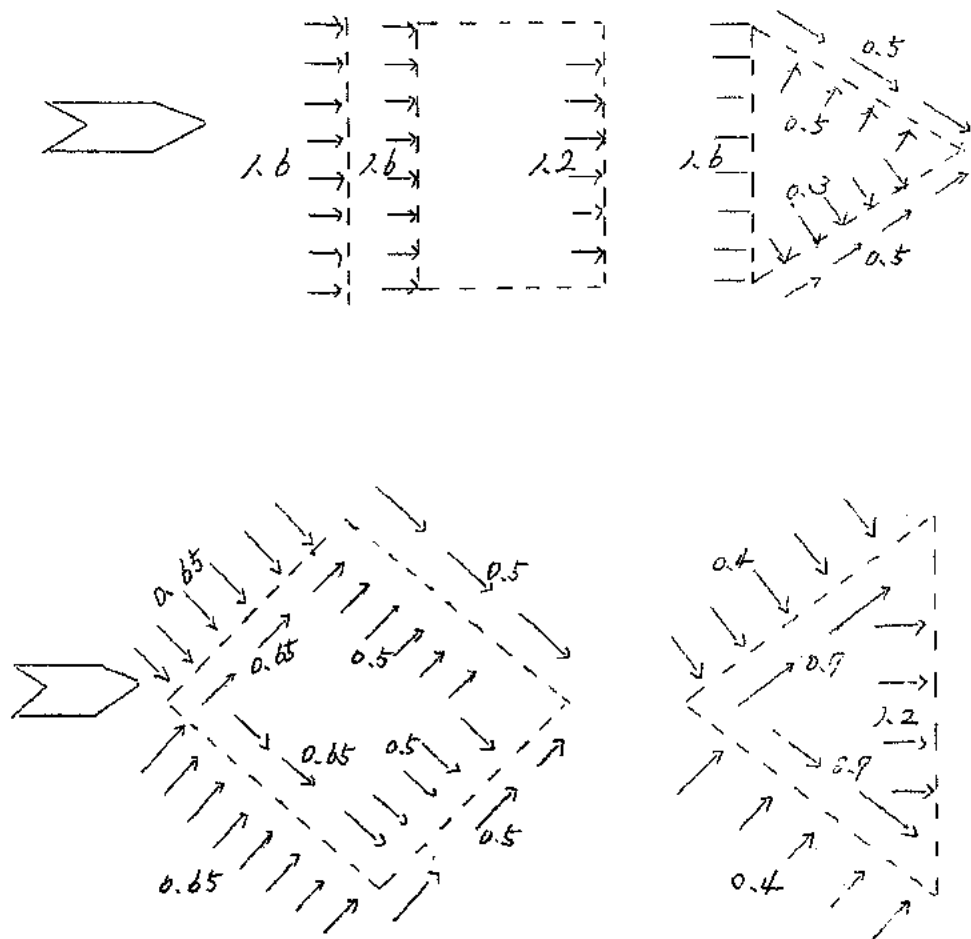


독립 지붕



지붕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가)와 (나), (나)와 (다) 또는 (나)와 (라)와의 각각의 중간치의 경우에는 풍력계수의 수치는 그 각각의 수치를 직선적으로 보간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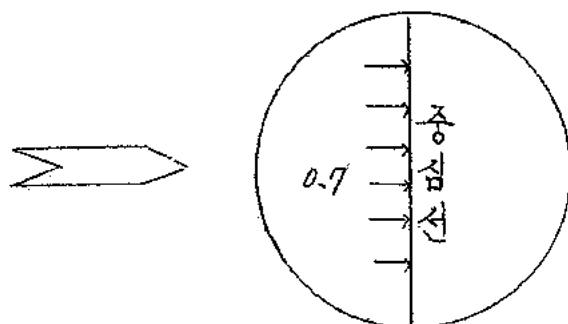
격자 구조물



위 도면의 수치는 격자 및 격자기둥의 단면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다.

풍압작용면적으로서의 격자의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본 격자재의 전면적을 취한다.

칼뚝 기타의 원통형의 구조물



※ 이 도면에 있어서  는 풍향을, $\rightarrow$ 는 중압력의 방향을, θ 는 지붕면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표시한다.

제3관 허용응력도

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제85조 (목 재) ①목재에 대한 나무결 방향의 허

(단위 : 킬로그램 / 1 평방센티미터)

목재의 종류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압 축	인장 또는 휨	전 단	압 축	인장 또는 휨	전 단
침엽수	육송 · 삼송 · 아까시아	50	60	4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 · 인장 · 휨 또는 전단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2배로 한다.		
	전나무 · 가문비나무(당송) · 일본삼송 · 미삼송 · 미솔송	60	70	5			
	잣나무 · 벚나무	70	80	6			
	낙엽송 · 적송 · 육송 · 솔송 · 일본송 · 미송	80	90	7			
완엽수	참나무 · 물참나무	70	95	10			
엽수	느티나무	80	110	12			
수	떡갈나무	90	125	14			

②전목으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제 1 항의 표의 수치의 2배까지 증대 할 수 있다.

③목재를 기초말뚝, 수조, 육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제 1 항의 표의 수치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④침엽수재의 허용압입응력도는 그 나무결 방향과 힘을 가하는 방향과의 각도에 따라 다음표의 수치로 하여야 한다.

나무결방향과 가력방향과의 각도		허용압입응력도
(1)	10도이하	제 1항의 표에 계기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의 수치
(2)	10도를 넘고 70도 미만	(1)항과 (3)항에 계기하는 수치를 직선적으로 보간한 수치
(3)	70도 이상 90도 이하	제 1항의 표에 계기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의 수치의 5분의 1 (토매와 기둥의 맞춤 기타 이들과 유사한 압입변형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맞춤에 있어서는 4분의 1)

⑤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 유효세장비에 따라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lambda \leq 100$ 의 경우	$f_k = f_c (1 - 0.007\lambda)$
$\lambda > 100$ 의 경우	$f_k = \frac{0.3f_c}{(\frac{\lambda}{100})^2}$
이 표에 있어서의 f_c, f_c 및 λ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f_c: 허용좌굴응력도(단위: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f_c: 나무결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단위: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λ: 유효세장비	

제86조 (철 재) ①철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허용응력도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압	축	인	장	철	전	단	축	접	촉	압	축	인	장	철	전	단	축	접	촉	
철재의종류																						
일반구조용강재		1,600		1,600		1,600		800		3,000		4,600	장기 응력에 대한 압축인장, 휨, 전단, 축압 또는 접촉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1.5 배로 한다.									
리벳트 강		—		1,600		—		1,200		—		—										
볼트	흑 피	—		800		—		—		—		—										
	마 강	—		1,000		—		1,200		—		—										
주 강		1,600		1,600		1,600		800		3,000		4,600										
주 철		1,000		—		—		—		—		2,800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철근		1,600		1,600		—		—		—		—										

장기 응력에 대한 압축인장, 휨, 전단, 축압 또는 접촉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1.5 배로 한다.

② 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 유효세장비에 따라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lambda \leq 30$ 의 경우	$f_k = f_c$
$30 < \lambda \leq 100$ 의 경우	$f_k = f_c \left\{ 1 - 0.4 \left(\frac{\lambda^2}{100} \right) \right\}$
$\lambda > 100$ 의 경우	$f_k = \left(\frac{0.6}{\frac{\lambda}{100}} \right)$

이 표에 있어서의 f_c , f_k 및 λ 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f_k : 허용좌굴응력도(단위: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f_c : 허용압축응력도(단위: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λ : 유효세장비

제87조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압	축	인	장	전 단 부	압	축	인	장	전 단 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 주압축강도의 3분의 1 이고 또한 75미만, 다만,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공방법에 의하는 경우 에는 75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인장·전단 또는 부착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2배로 한다.				

제88조 (용접) 용접으로 접합한 부분의 단면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여

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작업의 방법		이음의 형식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압	축	인	장	휨	전	단	부
(1)	외전축 또는 포지쇼나동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벗 드	1,400	1,400	1,400	700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인장·휨 또는 전단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1.5배로 한다.			
		피렛드	800	800	800	800				
(2)	(1) 이외의 경우	벗 드	1,200	1,200	1,200	600				
		피렛드	700	700	700	700				

제89조 (지반) 지반의 허용응력도는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

음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 톤 / 1평방미터)

지	반	장기용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용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경 암 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	장기 용력에 대한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2배로 한다.
	편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	
연 암 반	현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	
자		3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몸토		15	
모래 또는 점토		10	

제4장 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등

제90조 (안전·방화·위생상 중요한 부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건축물의 부분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부분.
2.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
3. 건축물의 내장 또는 외장부분으로서 안전상 또는 방화상 중요한 부분.
4. 계단·노대·난간벽.
5. 건축설비.

제91조 (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①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바닥면상 1.2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지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틀림벽·창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

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감층방화문이나 울충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백화점·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②제1항자호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④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92조 (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다목·제3호다목 및 제

4호다목에 계기하는 것으로서 그 철골의 부분을 철망콘크리트·철망물탈·콘크리트·물탈 또는 최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중 그 바름마탕을 불연재로 하지 아니한 것과 제2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 가목·나목에 계기하는 기둥 또는 보중 그 소경 또는 굵이 25센티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벽의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물탈이나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을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이거나 두께 3센티미터 이

상의 철망물탈 또는 최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 직하에 불연재로 된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망콘크리트·또는 철망물탈로 덮은 것이거나 철망콘크리트·철망물탈 또는 망임유리로 된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 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계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1항자호에 규정하는 두께에는 각각 물탈·최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③건축물의 최상층 부분(승강기탑·장식탑·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직하층부분과 4층이하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보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내화구조로 본다.

제93조 (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 자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로 한다.

1. 철망물탈질 또는 풀대외반죽질로서 그 바른 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목모시멘트판 위에 물탈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물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시멘트판·마스네시아시멘트판 또는 기와 위에 시멘트물탈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흙담조.
6. 심벽에 흙으로 맞 벽집한 것.
7.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개기하는 것외에 전 설부장판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 1층건축물의 외벽으로서 그 골구를 불연재료로 하고 그 표면에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목모시멘트판 또는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뒤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화구조로 본다.

제94조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에 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래인차로서 주무부장판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4. 건축물의 외벽의 개구부에 있어서 당해 개구부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부분과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에 외벽·날개벽·닫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개구부면적이 106평방센티미터이하인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물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방화카바(당해 환기공이 지표면상 1미터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을 포함한다).

제95조 (방화문의 구조) ① 제54조제 1항제 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 열수 있고 자동폐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철골콘크리트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이상인 것.

4.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개기하는 것 이외에 전 설부장판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 제94조제 1항제 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열수 있고 자동폐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철재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철골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미만인 것.

3.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미만인 것.

4. 철 및 망입유리로 된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재로 하고 그 양면에 합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재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티미터이상인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합석판을 붙인 것.

7.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개기한 것외에 전 설부장판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 개구면적이 5,000평방센티미터이하인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리로 된 것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 방화문은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턱솔개탕으로 하거나 등소란 또는 문소항등을 만들어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방화문을 다는 철물은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그 다는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⑤ 제 1항제 1호·제 2호 또는 제 2항제 1호·제 4호에 해당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 부터 내측으로 15센티미터이내에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한 개구부에 달아야 한다.

제96조 (방화구조) ①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로서 연 면적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울종방화문을 포함한다)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지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 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5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로 한 경우에는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체육관·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 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③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울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일부가 별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97조 (방화벽)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 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일 또는 지붕선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불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물탈로 충진할 것.

제98조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 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시장·공중목욕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창고·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

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기숙사·병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99조 (건축물의 제벽·간벽 및 격벽) ①연동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 밑 또는 지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병원·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호텔·여관·기숙사·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방화상 주요한 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지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 이내마다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 200평방미터를 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상호를 연락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

직거리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불록조인 굴뚝에는 따로 철재의 지지물을 설치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 밑, 반자안 및 바닥 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재로 씌울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 이외의 불연재로 씌운 부분은 그범하지 아니하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나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인 무근콘크리트조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불록조로 하고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불록조인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넘겨나기 시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 난로의 굴뚝연도의 굴뚝이 120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굴뚝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제5장 피난시설등

제1절 복도·피난계단및출입구

제101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②계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절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102조 (객석으로부터의 출구)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 (복도의 폭) 다음 표에 기재하는 복도의 폭은 각각 동 표에 기재하는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센티미터)

복도의 위치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복도의 구분		
국민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30	180
병원의 환자용 복도, 공동주택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복도, 3실 이하의 전용복도를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복도	160	

제104조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거실의 종류	구 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기타의 경우
(1) 백화점의 매장		30	30
(2) 병원 · 호텔 · 여관 · 공동주택 · 기숙사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		50	3
(3) (1)난 또는 (2)난에 계기하는 거실 이외의 거실		50	40

②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출계단으로 할 수 없다.

제105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자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에 있는 층이 제 2호 내지 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

1.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 ·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 · 여관 · 공동주택 · 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제 2호 및 제 3호에 계기하는 층 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피난층의 지상 또는 지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계기하는 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피난층의 지상 또는 지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제106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 방화문(환기용창으로서 그 면적이 2,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철제망입유리를 넣은 개구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별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 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 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7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

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통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샷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②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샷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한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 7 호 및 제 8 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쇠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

제108조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지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지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②제 1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옥상광장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본다.

제109조 (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 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한다.

②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분은 안여달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08조제 3항의 규정은 제 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 (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지안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①건축물(제139조제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통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가 도로 또는 공지에 최소한도 접하여야 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과 관계에 대하여는 제138조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주요구조부의 전부가 목조이고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주요 구조부의 일부가 목조이고 연면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때에는 내화구조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의 통로는 그 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것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때에는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외벽(처마가 있는 경우에는 처마 밑까지 포함한다)이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문을 가진 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건축물을 상호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락복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다만, 통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락복도의 개구의 폭은 2.5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폭이 3미터 이하일 것.
2. 통행 또는 운반 이외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할 것.

⑤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하층

제113조 (지하층의 설치)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 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전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바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가 있거나 인근에 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갈음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자연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제114조 (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벽 두께는 20센티미터 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3.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제6장 건축설비

제1절 총 칙

제115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건축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안전·방화 및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은 전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배관설비등

제117조 (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핀넬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 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18조 (난방설비)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극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

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9조 (상·하수관등의 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20조 (소화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변 소

제121조 (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배치되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변기로부터의 오수관 및 변조와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하고 접부질의 내수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방수물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변소의 바닥밀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 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하단을 지표면상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 것.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티미터까지의 부분의 지표면을 콘크리트·부토타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개할 것.

제123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편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호텔·여관·기숙사·정거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와 공동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불철무질의 변기를 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할 것.

3. 수세식 변소의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울 것.

②지박자치단체는 제 1항에 계기하는 건축물 또는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의 변소의 변조를 제124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125조의 수세식변조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조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4조 (개량변조) 개량변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조는 저류조 및 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할 것.

2. 변조의 천정·바닥·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저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80센티미터이상, 용적은 0.75입방미터이상으로서 100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저류조에는 청소하기가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달 것.

5. 소변기로부터의 오수관은 그 끝부분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40센티미터이상의 깊이에 삽입할 것.

제125조 (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물정화조의 구조는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6조 (누수방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변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오물정화조는 누수하지 아니하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7조 (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하 3미터이상의 깊이

에 매설한 폐쇄식 우물로서 그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피었거나 도수관에 안지름 25센티미터이하의 외관이 있고 그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승강설비

제12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에스카레이터 및 화물용승강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2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용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강중방화문이나 골중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

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181조 (승강기 등의 구조) ①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2조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①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감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만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83조 (에스카베이터의 구조) 에스카베이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

제5절 전기·통신설비

제184조 (비상조명장치) ①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3층이상의 특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대 통하는 주된복도 계단 기타의 통로에 비상용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병원·공동주택·여관·호텔·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화재에 대하여 안전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바닥면에서 1룩스이상의 조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5조 (통신설비) ①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86조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관리사무소·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전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제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7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상업지역내에 있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8미터 이상 10미터이하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및건축선

제18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막다른 도

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개기하는 폭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매지로부러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미터)

건축물의연면적	막다른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폭
200평방미터미만	10미만	2
	10이상 35미만	3
	35이상	6
200평방미터이상	10미만	3
	10이상 35미만	4
	35이상	6

②법 제53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 (특수건축물의 배치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이에 접하는 도로와의 관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 간.
2. 연 장.
3. 폭.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

제141조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 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폭 8미터 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결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복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통행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지역및지구내의건축물의제한

제142조 (지역내의 건축물) ①주거전용지역 내에서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주거지역 내에서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준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⑥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⑦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⑧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 8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⑩지역의 지정(지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그 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중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

에 위배된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 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축·개축(일부의 개축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설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용도에 관한 건축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축,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가.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의 전체율은 기준시 이후의 법정 전체율을 넘지 아니할 것.

나.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연면적(수취에 걸쳐서 증축할 때 또는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할 때에는 그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의 기존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다.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취에 걸쳐서 증축할 때 또는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할 때에는 그 증축에 의하여 증가되는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의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기존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인 기존건축물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 기존건축물이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출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증가하고자할 때에는 그 증가되는 원동기의 출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는 기준시의 원동기의 출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⑪지역의 지정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규모의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 대지의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기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기준시 이후의 법정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 7 까지로 할 수 있다.

⑫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지지역·준주지지역 및 녹지대지역내에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새마을공장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3조 (공원경역 및 예정지내의 건축물) ①법 제32조제3항에서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임지상 부득이하고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방·보안용의 초소·통신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과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5. 도서관·박물관·과학관·미술관·수족관.

②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동고한 도시 공원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3항의 “공원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어린이 놀이틀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3항의 “공원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놀이틀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유희

시설을 말한다.

제144조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풍치지구내에서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기재하는 건축물과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물은 10분의 2 내지 10분의 4, 대지의 조성은 토지면적의 10분의 4 이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③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공지,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5조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당해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차면시설·색박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6조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고도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율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7조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 기재하는 건축물.
2. 요리점·바·카바레·무도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3. 호텔·여관·독방·기타 각개의 휴게시설등이 있는 숙박장.
4.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시장·백화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6. 광고업에 쓰이는 창고.
7. 사적장·스머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과 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흥장.
8. 기타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48조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업무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기재하는 건축물.
2. 학교.
3. 기타 당해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그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축제한을 달리하여야 할 업무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제한할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9조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임항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사에 직접관계되는 공용 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 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3.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4. 항만이용을 위한시설.

제150조 (공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공치지구내에

사는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공지구내의 대지규모의 최소한도, 건축물,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지구의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1조 (보존지구내의 건축제한) 보존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52조 (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 한다)로 구획된 가구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구역에 지정된 지역, 지구에 관한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 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토지 이용상 부득이 하고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 및 그 인근 구역의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정비지구내의 기존건축물의 현황도와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또는 도면.
3.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③시장·군수가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정비지구내의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⑤토지소유자가 제4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법 제33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제6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자 이외의 관계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제7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소유자의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사가 법 제33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자 및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사가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⑩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나 법 제33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3조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 기준 및 주차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도로의 효율을 유지하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4조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공항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여하는 공항시설의 확장·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매를 인가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5조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그 지구지정의 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기타 그 지구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2.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3.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학교·도서관·병원·박물관·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

제156조 (기타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4조 내지 제155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당해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7조 (적용의 특례) 시장·군수는 지구의 지정·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구의 변경등"이라 한다)이전의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로서 지구의 변경 등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것(중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장 대지에의한건축제한

제158조 (전폐율의 완화)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도로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대지로 한다.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 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제15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 : 200평방미터.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9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평방미터.
4. 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평방미터.

제160조 (용적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녹지지역 : 2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

술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할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전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도도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전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 1항제 3호 내지 제 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 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전축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 1항제 3호 내지 제 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제16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도로로 둘러싸인 가구(그 가구안에 다른 도로가 없는 것에 한한다)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각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의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그 대지가 접한 각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각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각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각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인접부분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높이는 당해 각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준하여 이를 제한한다.

제162조 (정비된 가구내의 완화)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의 가구(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로서 그 단변 길이가 8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안에서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안의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163조 (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에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있는 부분.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있고 또한 잔여도로측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164조 (공원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전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전축이 금지된 공지 등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165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안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완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166조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①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5미터이상인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7미터이상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폭12미터이상인 도로 2개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둘레길의 4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10분의 6 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제167조(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대지 경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최외곽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로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진북방향은 8미터, 기타 방향은 17미터(주거전용지역내에 있어서는 진북방향은 4미터, 기타방향은 8미터, 준주거지역내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에 있어서 17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지역내에서 4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 건축하여야 한다.

③동일대지 안에 공동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의 주방향 전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상을 공동주택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방향 후면에 공동주택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8조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건축물로 한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상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높이가 10분의 4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0장 감 독

제169조 (손실보상)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시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0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전설부장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풍고하여야 한다.

제171조 (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전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또는 군의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 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관제 공무원과 도시부회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이에 의거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2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법 제3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5. 법 제53조의 7 및 이 영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 등은 제4항 각호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전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2조 (승인)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장 직

제173조 (재해구역 지정의 고시) 시장·군수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4조 (가설 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구조이고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콘크리트블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시장·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75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준용)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증 제3조·제5조·제6조제4항·제5항(동조 제4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6항·제7조(제1항후단문 제외한다) 제7조의 3 제1항·제8조·제9조제4항·제9조의 2 내지 제11조·제21조·제24조(구조 및 구조제산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5조(건축물의 기초 주요 구조부 기타 안전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3항·제28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 2(이 경우의 담장 벽면·지붕에는 당해 옹벽·공작물 등의 형태·구조상 이에 갈음하는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33조(동조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제145조제2항의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2조·제42조의 2(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3조·제44조·제45조제1항제3호·제46조제1항·제50조·제51조·제53조 및 제53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지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난로의 굴뚝을 제외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철주·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깃대·용·가공전선로용의 것을 제외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관·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

제176조 (굴뚝) ①제175조제1호에 계기하는 굴뚝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도관·콘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된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시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틀 또는 지선을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은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제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콘

크리트의 피복두께를 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를 넘는 골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골벽의 지선과 끝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석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

제177조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 제175조제3호 및 제4호에 제기하는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 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 (옹벽 및 담) 제175조제5호에 제기하는 옹벽 및 담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찰쌓기로 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

제179조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활용) ①법 제53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연면적 50평방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②건설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개정·폐지·가격과 관리 및 취급요령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80조 (적용의 특례) 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한한다) 또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434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의 시행당시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8년 6월30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인 건축물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10층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자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난·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개정법 시행당시 이 영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기본할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증요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제138조제1항의 표에 제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거리이상을 후의(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한다)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지역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도시의 인구분산·교통소통·공해방지 기타 공익상 특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984호 건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이하 이 항에서 "부적합한 구조"라 한다)의 기존건축물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그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허가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2층이하이고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목조의 기존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 밑이 방화구조인 것)일 것.
2.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화에 걸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50평방미터이하이고 당해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를 넘지 아니하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별표 1] 주거전용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주 백
- ②유치원
- ③국립학교
- ④공중목욕탕·다만, 독탕 기타 각개의 휴게실등이 있는 목욕탕을 제외한다.
- ⑤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⑥일용잡화상·이용원·의원·약국·세탁소(직접 세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점포를 겸하는 주거용건축물로서 그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에 쓰이는 건축물

⑦주거결용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계기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물·다만, 그 부속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제1항 내지 제7항에 계기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5분의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⑨운동시설용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것.

⑩주거전용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별표 2]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별표 3에 계기하는 건축물

②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2층이상이거나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의 합계 10리터 이상의 아세틸렌발생기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2. 원동기를 사용하는 2대 이상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전조연마. 다만, 공구연마를 제외한다.
3. 원동기를 사용하는 골크·에보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전조연마
4.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끓질
5. 원동기를 사용하는 시멘트제품의 제조
6. 원동기를 사용하는 어육연제품의 제조
7. 인쇄용 평판의 연마
8. 출력의 합계 1.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인쇄·제첩 또는 석재조개기
9. 출력의 합계 1.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로 가동하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
10. 출력의 합계 0.75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제재·제봉·편물·직조·부대제

조·실꼬기·줄짜기 또는 금속의 연마·가공
11. 출력의 합계 2.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제분

12. 당의기를 사용하는 파자의 제조

13. 합성수지의 사출성형가공

④작업장의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공장

⑤판매장의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백화점

⑥창고업에 사용되는 창고 또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⑦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상의 영업용 차고

⑧농수산물도매시장

⑨호텔·여관 다만,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호텔을 제외한다.

[별표 3]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①별표 4에 계기하는 건축물

②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다만, 관광호텔에 부속되는 것을 제외한다.

③요리점·카페테·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다만, 관광호텔에 부속되는 것을 제외한다.

④독당 기타 자개의 휴게실 등이 있는 복욕탕. 다만, 관광호텔에 부속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사적장·스러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과 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흥장. 다만, 관광호텔에 부속되는 것을 제외한다.

⑥세차시설이 있는 자동차 수리공장

[별표 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수없는 건축물

①별표 7 제 1항에 계기하는 건축물

②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서 그 작업장의 바닥면적(2층이상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다만, 일간 신문의 인쇄소와 작업장의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인 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 보통화공품의 제조
2.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다만, 용해 아세틸렌가스 또는 용광의 합계 30리터이하의 아세틸렌가스발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화성용제불 사용과 큰 세탁·드라이라이닝 또는 도로의 가열 건조

4. 세루로이드의 가열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공

5. 인쇄잉크 또는 그림물감의 제조

6. 출력의 합계 0.75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로의 뽐질

7. 아황산가스를 사용하는 플롬의 포박

8. 어분 또는 어분을 원료로 한 사료의 제조

9. 한지의 제조

10.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11. 우·모류의 세척·염색 또는 포박

12. 냄바·유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선별·세척 또는 포박

13. 원동기를 사용하는 제재·제면·원송의 제재·털세우기·반모 또는 펠트의 제조

14. 원동기를 사용하는 배·빨·조개껍질류의 조개기·건조연마 또는 3대이상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

15. 원동기를 사용하는 광물·암석·토사·유황·금속·유리·벽돌·도자기·뼈 또는 조개껍질 등의 분쇄

16. 먹 또는 연탄의 제조

14. 용해용기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융 또는 활자·금속 공예품의 주조. 다만, 인쇄소에서 활자의 주조를 제외한다.

18. 기와·박돌·토지·도자기·인조숫돌·독·범랑철기의 제조

19. 유리의 제조 또는 그 모래 뽐질

20. 금속의 용해 뽐질 또는 그 모래 뽐질

21. 동력회 또는 로오라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22. 드럼통의 세척·제생

23. 맥더믹스드 콘크리트의 제조

④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과장장·도살장·전애 및 오물처리장

⑥바닥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의 축사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①공장(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②창고

③자동차정류장

④주유소

⑤제 1항 내지 제 4항에 계기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물. 다만, 주택을 제외한다.

⑥전용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별표 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수없는 건축물

①호텔·여관

②요리점·카페테·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③독탕 기타 각개의 유계실등이 있는 목욕탕
- ④사적장·스러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과 기타 사행성 있는 유기장
- ⑤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⑥병원 및 요양소
- ⑦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⑧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식물원·수족관·탁아소·양육원·양노원
- ⑨사원·교회등·종교용 건축물
- ⑩축사

[별표 7]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 용도화약류탄속법이 규정하는 화약류의 제조
2.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질산염류·황산·적린·유화연·금속칼륨·금속나트륨·마그네슘·과산화수소수·과산화카리·과산화소다·과산화바륨·이류화탄소·메타놀·알콜·에에델·아세톤·포산에스테르·니트로셀룰로오즈·벤졸·도르올·키시톨·피크린산·피크린산염류·페레핀 유 또는 석유류의 제조
3. 성냥의 제조
4. 세루로이드의 제조
5. 니트로 셀룰로오즈제품의 제조
6. 비스코오스제품의 제조
7. 합성염료 또는 그 중간물·안료 또는 도료의 제조. 다만, 옷칠 또는 수성도료의 제조를 제외한다.
8. 인화성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 또는 방향유의 제조
9. 건조유 또는 인화성용제를 사용하는 의력지로 또는 방수지로의 제조
10. 목재를 원료로 하는 활성탄의 제조. 다만, 수증기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석탄가스류 또는 코오크스의 제조
12.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의 제조. 다만, 제빙 또는 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염소·취소·요오드·유황·염화유황·불화수소산·염산·질산·황산·인산·가성카리·가성소오다·암모니아수·탄산가리·세탁소오다·소오다회·포백분·차아질산칼륨·아황산염류·티오황산염류·비소화합물·연화합물·바륨화합물·동화합물·수은화합물·사안화합물·크롬크로몬산·크롬로름·사염화탄소·포르마린·조르포나트·그리세린·이히티올·조르몬산·안몬·조산·석탄산·안식향산·탈닝산·아세트아니리드·아스피린 또는 구아닌의 제조

14. 단벽질의 가수분해에 의한 제품의 제조
15. 유지의 채취·경화 또는 가열가공. 다만, 화장품의 제조를 제외한다.
16. 팩티스 또는 합성수지의 제조
17. 비로의 제조
18. 제지, 팔프의 제조. 다만, 한지의 제조를 제외한다.
19. 제혁 아교의 제조나 모피 또는 뼈의 정제
20. 아스팔트의 정제
21. 아스팔트·물발·물발, 석유증류산물 또는 그 잔유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22. 시멘트·석고·소석회·생석회 또는 카바이트 제조
23.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 다만, 용량의 합계 50리터 이하의 용해용기를 사용하는 것 또는 활자 금속공업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삭마작업 또는 리벳치기 작업. 다만, 그라인다를 사용하는 삭마작업을 제외한다.
25. 전기용 카이본의 제조 또는 후연의 분쇄
26. 쇠못류 또는 강구의 제조
27. 철력의 합계가 4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로 가동하는 모을을 사용하는 금속선·금속관·금속판 등의 압연
28. 동력회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다만, 스프링합마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9. 동물의 내장 또는 배설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
- ②호 텔
- ③요리집·카바레·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④독탕 기타 각개의 유계실 등이 있는 목욕탕
- ⑤사적장·스러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과 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기장
- ⑥극장·영화관·연예장 또는 관람장
- ⑦백화점

[별표 8] 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과 이에 부수하여 당해 지역내의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 ②공원·운동장·보지류의 시설에 부속되는 관람석·휴게소·탈의장·관리사무소·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기능을 다 하는에 필요한 건축물
- ③단독주택·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사원·교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 ④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식물원·수족관·공회당·병원·탁아소·양육원·양노원·남골당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 ⑤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호텔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 新刊案内 ——

建築의 構造

M·살바도리 / R·헬러 共著
尹 一 柱 / 金 容 孚 翻譯

이 책은

아름다운 建築을 사랑하며 그것이 설 수 있는 까닭을 알기 원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건축의 設計를 꿈꾸며 그것이 세워질 것을 원하는 사람과,
또한 아름다운 건축을 설계 하였고 그것이 세워진 까닭을 알기 원하는 사람
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ARCHITECTS' WORKING DETAILS 各卷 2,800원

■ 全世界의 유명한 建物 2000余 케이스를 詳細히 解剖 /

Edited by D. A. C. A. BOYNE
責任編輯 金 亨 杰

現代建築事典

編者 本三郎・에인트
譯者 張 聖波
特價 7,000

世界的 建築家 1500名(Aalto부터 Zweifel까지)의 作品・思想・人間을 整理한 最新版 建築事典 /

圖集 建築의 아무림 各卷 2,500원

編者 中善寺發喜次
譯者 張 聖波

이 圖集은 모든 建物에서 採擇되고 있는 「아무림」(俗稱 오시미라)의 手法을 縮尺 1/2, 1/4, 1/8, 1/16의
部分詳細圖로서 分類하였을 뿐만 아니라 設計・施工上の 解説을 부친 것이다.

道路建設大講座

翻譯 道路建設研究会
推薦 成均館大學校 土木工學科長 全夢角

定價 各卷 3,500원

最新道路技術의 理論과 實際을 現場技術者에게 맞도록 實務에 力點을 둔 具體的인 解説集

圖書 民 音 社
出版

서울 鍾路區 清進洞 269 : (74) 2000/(75) 8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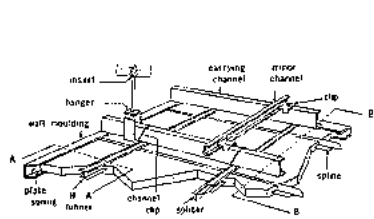
削除公告

1971年 6月20日 本社에서 發行한 建設大法典 P 823 「부경건축사 처벌규정」을 編輯上 착오로
이를 金文 削除합니다. 이로 인하여 關係當局과 建築士 제위께 心慮를 끼쳐 드린 것을 衷心으로
謝過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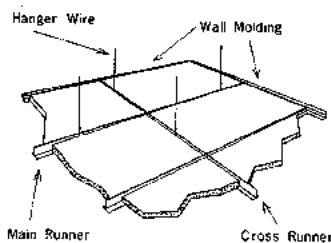
H-BAR式
T-BAR式
M-BAR式

輕量鉄骨天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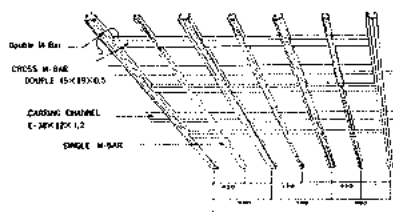
建築物을 火災로부터 解放시켜 주십시오./



H-BAR式



T-BAR式



M-BAR式

特 徵

- ① 不燃材料이므로 火災의 위험이 없다.
- ② 溫度・濕度の 변화에도 變形이 없다.
- ③ 重量은 木材물에 비하여 약 2 / 3 에 불과하다.
- ④ 組立式이므로 工期가 短縮된다.
- ⑤ 完全亞鉛鍍金이므로 腐蝕의 우려가 없다.
- ⑥ 堅固精密하며 壽命이 永久의이다.
- ⑦ 天井内外에 부수되는 모든 關聯工事의 施工에 便利하다.

主要施工処



(본사가 시공한 무역협회 회관)

- 3 정대통령도 조대아도
1 쫓겨난 전종익을 산동 데
로 할 부한 제조맨 일 산이 주
발청 공을 보 병회
당사장관와 헬사원관과

- 트관국판사월청관원영장
파육송 공호지 환발공
아채발호 폐부회합방스
인화 조각중 과보로한
외대훈 국연청부 국차로
산복산 국연청부 국차로
남경마원한대전제한자미세

日本昭和造機KK와
技術提携

韓寶建設株式會社

本社工場：서울特別市 麻浦区 望遠洞五七番地

中央私書函5182号

☎ · 32—8288 · 34—1442

DONGWON ACCORDION

HARMONY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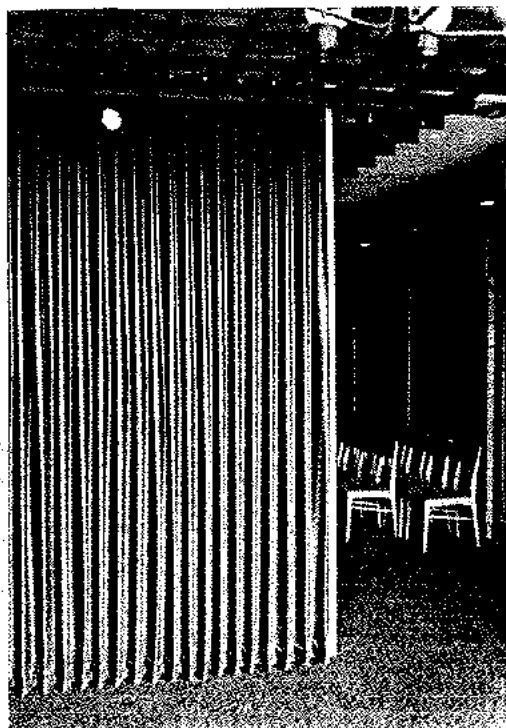
實用新案特許 第8091號
意匠特許 第9924號
商標登録第26010號

2 in 1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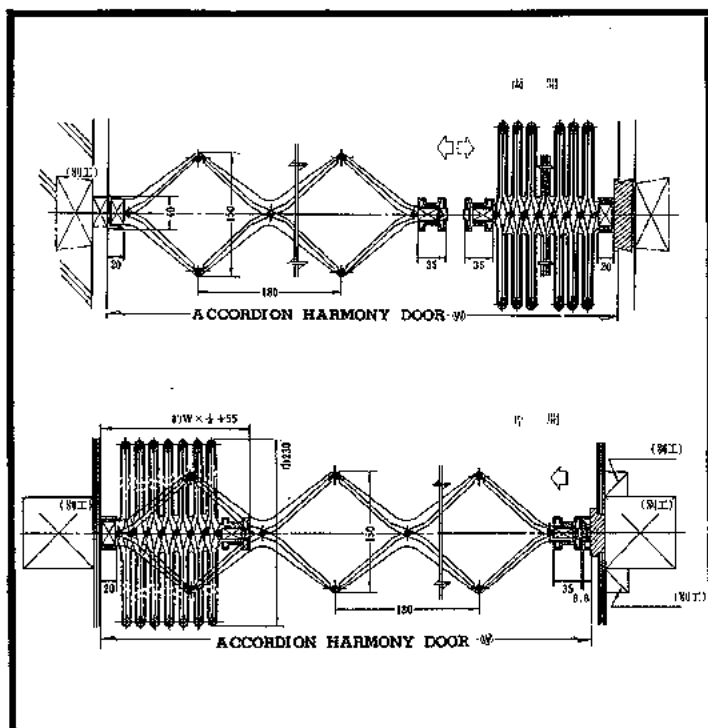
-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 大와 小를 兼하는 移動하는 칸막이
- 스무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 故障이 없고 永久的인 堅固한 製品



동원 아코디온 하-모니 도아



아코디온 하-모니도아製造元



東原機械商社

事務室 서울特別市 中区會賢洞三街一番地
工場 서울特別市 麻浦区東橋洞五番地

電話 23-2401番

釜山支社 6-6856

大邱支社 3-0174